

월간
재정포럼

2018. March_Vol.261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3

권두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와 규제 | 박재환

현안분석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최한수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 신상화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와 규제 · 박재환 02

현안분석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최한수 06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 신상화 4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외 ... 68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104

정책흐름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109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최 114



4차산업혁명 시대와 규제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자유경쟁시장의 폐단으로 부의 편중 및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효율성만을 강화하여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의 모순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케티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린제이와 존스홉킨스대학의 텔레스는 *The Captured Economy*를 통해 정부의 퇴행적 규제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을 통제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규제가 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장치 구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검토가 적절히 이뤄져야

어떤 사건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격앙이나 도덕적인 주장, 문제에 관한 제한적 정보 및 정치적 압력 등으로 규제로 야기될 비용은 저평가되는 성향이 있다. 최근 기술혁명과 인식의 변화로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초지능의 융복합 시대에 들어서며 한쪽의 규제가 다른 여러 영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융복합의 통합적 사고와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통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의 목표는 예측가능한 적용과 신뢰할 수 있고 지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최근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적인 의원입법이 폭주하면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나마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입법은 사전 규제영향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 억제장치가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만연한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최근의 대형화재참사를 경험하면서 안전 등의 영역에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규제의 역선택처럼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규제가 많다.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AI가 질병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유전자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 등과 융합한 보건산업 분야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 홈케어 등 원격의료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대면의료행위만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AI 기술을 통한 플랫폼 활용이 요원한 상황이다. 미래는 클라우드, AI 등 데이터가 핵심이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가 넓어 의료기관 간 정보시스템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융합과 혁신의 시대에 일자리를 선도해야 할 주체는 혁신벤처기업이다. 구글캠퍼스 서울이 발간한 스타트업코리아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에 투자된 누적금액 중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에 투자된 금액이 대략 40%에 달하며 30%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글로벌 혁신창업기업 중 약 70%에 이르는 혁신창업이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힘들다. 데이터개방을 외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ICT 산업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뛰어난 개별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시장에서 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에 있다.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이에 기대를 걸어본다.

OECD에서는 기업가정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세율 및 조세순응비용 등의 조세요소를 포함하는 각국의 규제체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은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청행정개혁 TF의 국세행정개혁권고안에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데이터개방과 공유 등을 포함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재정분야의 데이터 개방은 실적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문적 용도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 등 다양한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

.....

미래는 클라우드, AI 등 데이터가 핵심이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가 넓어 의료기관 간 정보시스템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

.....
**우리도 납세자의
 소득 DB가
 국가기본 데이터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제반 준비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이루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않다는 불만이 많다. 개인정보보호로 보여주기식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데, 민감한 정보는 필터링 등을 통하여 개인비식별정보를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위한 혁신노력도 요구된다.

국세행정 분야에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어야

선진국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한 비식별 정보는 법률로 활용근거를 마련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의 소셜커머스 업체도 소득별 고객개인정보를 더한 빅데이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당장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5만여 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추산에 의해 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추계신고비율은 40%를 초과하여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국가재정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소득 DB의 근간은 국세청 소득 DB이며 동 소득은 복지수혜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의 기준이 된다.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대상자 선정에도 소득자료가 이용되고 있어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DB는 건강보험료 부과 등 의료보험 및 복지프로그램사업에도 근간이 된다.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도입과 IT Scraping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자영업자 장부기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만큼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통한 실질 소득신고는 소득 DB로서 조세뿐만 아니라 국가기본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IRS는 IT기업과 협업하여 납세자의 방대한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거 납세자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여 탈세 및 부정환급 방지 등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사업의 부당지출 및 의료보험과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활용을 준비 중이다. 우리도 납세자의 소득 DB가 국가기본 데이터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제반 준비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이루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최한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I. 문제제기¹⁾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oihs@kipf.re.kr)

기본소득 논의가 만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토피아적 사회담론의 하나에 지나지 않던 기본소득제도는 국내외의 여러 기본소득 실험-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혹은 청년수당)-으로 인해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대안 중 선택 가능한 복지 어젠다의 하나로 인식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²⁾ 그러나 현 단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이슈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제 실행에 있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2015년 기준으로 국가가 1인당 2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면 여기에 대략 12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2015년 정부의 예산이 375조원이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15.7조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복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정책 대안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처럼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고민이 갖는 무게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예산과 기본소득을 연관시켜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예컨대 증세 없이 기존 복지예산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증세를 시도할 경우 어떤 방식의 증세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할수록 이러한 질문들은 보다 정교한 내용을 갖는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도 수혜집단(winner)과 배제집단(loser)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제도 역시 수혜자 그룹과 배제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기본소득의 수혜집단이 되고 누가 배제집단이 될 것인가? 예컨대 저소득층이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위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것인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본소득에 대한 간단한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의 결과를 통해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이에 근거한 간단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해 낼 것이다(제Ⅱ장). 그리고 가상가구(hypothetical household)에 근거한 세금-편익 모형(tax-benefit model)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할 경우(제Ⅲ장) 가상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상가구의 소득 수준과 유형(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주되게 살펴볼 것(제Ⅳ장)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현 단계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서술하겠다(제Ⅴ장).

II. 분석명제의 도출

1. 예산중립적 vs. 예산증가적 기본소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월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브루스 애커만, 앤 알스톡,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2011, p. 11; 최한수(2017a) 재인용)”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의 구성요소는 ▲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갖는 보편성의 원칙 ▲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무조건성의 원칙 ▲ 혜택의 기본 단위가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에서도 수혜집단과 배제집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제도 역시 수혜자 그룹과 배제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기본소득의 수혜집단이 되고 누가 배제집단이 될 것인가?

1) 본 원고는 최한수(2017b)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다.
2) 비록 온라인 설문이기는 하지만 석재은(2017)은 조사대상자의 약 63%가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 혹은 대체로 찬성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최한수(2017b)에서 재인용).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기존 지출항목의
조정을 통해서만
마련됨을 의미한다.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란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재원외에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성의 원칙 ▲ 그리고 현물급여나 조세지출이 아닌 현금이전의 원칙 ▲ 급여 수준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그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예산중립적 기본소득과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으로 나누고자 한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budget-neutral basic income) 제도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기존 지출항목의 조정을 통해서만 마련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세출의 조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복지급여(특히 현금급여)의 폐지 혹은 기본소득으로의 대체뿐 아니라 각종 공제조항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예산증가적 기본소득(budget-increasing basic income) 제도란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재원외에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에 비해 개개인이 받는 기본소득의 액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를 위한 명목세율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이는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납세액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 분석 명제의 도출

본 절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할 명제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항등식을 살펴보자. 현행 제도(위첨자 CS로 표현)하의 개인 i 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D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text{가처분소득}(DI_i^{CS}) \equiv \text{현행 세제하 근로소득}(Y_i^{CS}) + (\text{공적이전소득}(TR_i) + \text{조세지출편익}(TE_i)) - (\text{현행 세제하 소득세}(T_i^{CS}) + \text{사회보험료}(SI_i^{CS}))$$

일반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수혜금과 사회부조수혜금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수혜금(대표적으로 실업급여³⁾나 국민연금)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부조수혜금에 한정함을 가정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이를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모의실험에서 살펴본 사회부조수혜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개념은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 예컨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상의 공적이전소득과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상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금과 같은 사회보험수혜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사회부조수혜금, 세금환급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수혜금은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였고 세금환급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조세지출편익으로 정의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항목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모의실험에서는 이를 조세지출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볼 것이다.

가처분소득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조세지출편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이란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소득세법」상의 모든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이하 ‘공제조항’으로 지칭)으로 인해 개인이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의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들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의 근로소득과 과표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공제조항이 없을 때 개인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과 현행 제도상의 결정세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공적 비소비 지출은 크게 (경상)조세와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상)조세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고,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 보험을 의미한다. 가상의 가구를 상대로 계산된 경상조세액은 조세지출편익으로 인해 실제 이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지출편익 때문이다. 실제 개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나 사회보험료 공제를 제한 뒤 산출되는 세액에 다시 각종 세액공제를 감안한 뒤 결정된다(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그림 Ⅲ-1]을 참고하라).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상조세액은 소득세와 관련된 어떠한 공제조항도 적용하지 않을 때 도출되는 (가상의) 세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상조세액과 조세지출편익을 나눈 이유는 조세지출편익처럼 공제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감액된 세액을 공적이전소득처럼 개인들이 정부로부터 받

**가상가구에 근거한
세금-편익 모형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할 경우 가상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이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급여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는 (암묵적 형태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세금을 납부한 뒤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이고 조세지출편익은 세금을 납부하는 단계에서 (세금부담이 감경됨으로써) 받는 편익이다. 개념적으로 이 두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이후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이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급여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하의 가치분소득(위첨자 BI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text{가치분소득}(DI_i^{BI}) \equiv \text{기본소득제도하 근로소득}(Y_i^{BI}) + (\text{기본소득}(BI_i)) - (\text{기본소득제도하의 소득세}(T_i^{BI}) + \text{사회보험료}(SI_i^{BI}))$$

결국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개인의 가치분소득과 현행 제도하의 가치분소득의 차이는

$$DI_i^{BI} - DI_i^{CS} \equiv (Y_i^{BI} - Y_i^{CS}) + (T_i^{CS} - T_i^{BI} + SI_i^{CS} - SI_i^{BI}) + [BI_i - (TR_i + TE_i)] \quad (1)$$

식 (1)에서 보듯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소득제도로 대체되었을 경우 개인들의 가치분소득의 변화는 결국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의 합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먼저 ▲ 기본소득하의 노동소득과 현행 제도하에서의 노동소득의 차이, 다음으로 ▲ 기본소득 금액과 현행 제도하의 공적이전소득액 및 조세지출편익의 합의 차이, 마지막으로 ▲ 현행 제도하의 소득세액 및 사회보험료와 기본소득하에서의 소득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차이가 그것이다.

식 (1)에서 $DI_i^{BI} > DI_i^{CS}$ 위해서는 우변의 세 항목의 합이 0보다 커야 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할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시장의 참여⁴⁾ 및 노동시간의 결정 여부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표현한 식이 가정 A다.

$$Y_i^{BI} - Y_i^{CS} = 0 \quad (\text{가정 A})$$

4)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흔히 노동공급의 extensive margins이라고 표현한다.

5)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흔히 노동공급의 intensive margins이라고 표현한다.

가정 A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후로 경제주체 i의 노동공급에 변화가 없을 때 만족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개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에 미치는 통로로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은 경제주체 i의 부(wealth)를 증가시켜 그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선을 평행 이동시킨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개인은 보다 많은 여가를 선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효과(income effect)라고 부른다. 또 다른 통로로 여가와 노동의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도하에서는 소득세가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은 이전되는 기본소득 액수만큼 개인의 부가 증가한다(즉 소득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인해 기본소득 도입은 여가와 노동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효과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세율인상을 통해 마련하려는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의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결국 개인의 세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소득효과 외에도 여가와 노동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정은 가정 A라기보다는 다음의 가정 B와 같을 것이다.

$$Y_i^{BI} - Y_i^{CS} < 0 \quad (\text{가정 B})$$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 B 대신 가정 A를 채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려는 세금-편익 모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공급 탄력성(elasticity of labor supply)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significant)할지는 몰라도 그 크기는 경제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Borjas(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성근로자(prime-age male)의 노동공급탄력성은 대략 0.1 근방에 있다. 즉 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후 임금이 10% 감소하면 노동공급이 1%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임금근로자가 1명뿐인 가구의 임금근로자의 비보상임금탄력성은 0.142로 추정된 바 있다(성명재 외(2010), 오종현 외(2015)에서 재인용).⁶⁾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기본소득 도입이 개인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세율인상을 통해 마련하려는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의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결국 개인의 세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소득효과 외에도 여가와 노동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6) 미국의 음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실험을 연구한 Marinescu(2017)도 음의소득세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의
노동시간 선택에 있어
행태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채택한 뒤
모의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의 노동시장의 참여 및 노동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의 노동시간 선택에 있어 행태의 변화가 없다(즉, 임금소득의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채택한 뒤 모의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3. 분석 명제

가. 사례 1: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사례 1에서는 먼저 조세의 인상 없이 현행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이나 조세지출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가정 C로 표현할 수 있다.

$$T_i^{CS} - T_i^{BI} = 0 \quad (\text{가정 C})$$

또한 우리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통해서만 조성될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SI_i^{CS} - SI_i^{BI} = 0$ 이다. 가정 A와 C에 따라 사례 1에서 $DI_i^{BI} > DI_i^{CS}$ 여부는 결국 $[BI_i - (TR_i + TE_i)]$ 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delta_i = BI_i / (TR_i + TE_i)$ 라고 정의하자. 결국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에 있어 $DI_i^{BI} > DI_i^{CS}$ 는 $\delta_i > 1$ 보다 크다는 것과 같다.

δ_i 가 1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다. 먼저 경제주체 i 에 있어 분자인 BI_i , 즉 기본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분모, 즉 현행 복지프로그램이 주는 편익보다 큰 경우이다. 즉 어떤 개인이 받는 기본소득의 액수가 현행 제도하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의 편익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 개인은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치분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처럼 천연자원의 운용수익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재정제약으로 인해 개개인에게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금액을 주지 못한다. 여기에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려했을 때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의 기본소득 금액은 기본적으로 높을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보다 흥미로운 경우는 반대의 사례, 즉,

BI_i의 액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의 정의상 BI_i=BI인 반면, δ_i의 분모는 경제주체 i가 어떤 소득분위에 속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즉 기본소득급여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TR_i+TE_i가 크지 않는 i의 경우 δ_i가 1보다 클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i는 소득분위 중 어느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직관적으로 답해보자. TR_i+TE_i가 0에 가까운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BI의 크기가 아주 작다하더라도 경제주체 i의 δ_i가 1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 i는 현행 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이나 조세지출편익이 그다지 크지 않는 소득분위에 속한 경제주체, 즉 중위소득계층⁷⁾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주된 수혜자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저소득계층의 경우도 최하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효과가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포괄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을 추론할 때 여러 문제를 노정(路程)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의 특징(강신욱, 2015)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복지프로그램하 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소득 최하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위계층 외에 차상위계층 또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⁸⁾

명제 1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저소득계층, 특히 소득 최하층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현행 복지프로그램하 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소득 최하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위계층 외에 차상위계층 또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7) 일반적 기준에 따라 저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한 가구를, 중위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의 50%~150%, 그리고 그 이상은 상위소득계층으로 본다.
8) 여기서 누군가는 상위소득계층도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상위소득계층 역시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상위소득계층은 중위계층과 달리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제로부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조세지출편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편익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에서 나오고 있다면 누진세율하에서 고소득계층이 누리는 혜택은 나머지 다른 소득계층보다 크다. 따라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금액이 고소득계층이 누리는 혜택의 손실을 만회할 정도에 크지 않다면 고소득층은 제도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최하층은 새로이 이전되는
기본소득 금액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공적이전지출과
조세지출편익의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여지가 있다.

나. 사례 2: 예산증가적 기본소득

우리는 앞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 특히 소득세를 통해서 조달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추가 예산 소요 기본소득제도하에서 $T_i^{BI} > T_i^{CS}$ 가 되고 $(T_i^{CS} - T_i^{BI})$ 는 음수가 된다. 따라서 이제 $DI_i^{BI} > DI_i^{CS}$ 이기 위해서는 예산 중립적 기본소득과 달리 δ_i 가 1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한다.

물론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도 명제 1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즉 정부에 의해 이전되는 기본소득 금액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현재의 소득보장제도하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던 최하층은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반면에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사례 2에서는 일정한 경우 최빈곤층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 1과 달리 사례 2에서는 기본소득 금액의 상한(upper limit)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진다. 정부는 세율을 올려 개개인이 받는 기본소득의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최하층은 새로이 이전되는 기본소득 금액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공적이전지출과 조세지출편익의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소득분위의 상위에 있는 계층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BI의 크기는 $(T_i^{CS} - T_i^{BI})$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소득 상위구간에 있는 경제주체 i 는 증세가 수반되는 기본소득제도하에서 $TR_i + TE_i$ 의 축소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외에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들에게는 상위구간의 보다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 지출 소요 기본소득제도에서 고소득층이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명제 2가 도출된다.

명제 2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최하층도 세율과 기본소득 금액에 따라 현행 복지제도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상위소득계층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다. 사례 3: 가구원 수별 차이

소득분포상의 위치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는 가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 i 를 개인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전시켰다. 만약 i 를 가구(household)로 볼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급여의 경우 기본 수급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라는 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예산증가적으로 중요한 가정을 해보자. n 명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자는 단 한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I_i - (TR_i + TE_i)]$ 는 $BI(n) - (TR(n)_i + TE(n)_i)$ 로 수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여러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도의 차이 중 하나는 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와 수혜 정도가 정확히 비례(proportional)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행 제도상의 여러 혜택들은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균등화 원칙으로 인해 혜택의 증가 폭이 체감한다. 이를 간단한 수학적 표식을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R'(n)_i > 0$, $TR''(n)_i < 0$ 인 데 반해 $BI'(n) > 0$, $BI''(n) = 0$ 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3번째 명제가 도출된다.

명제 3

기본소득 금액의 수준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Ⅲ.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설계

기본소득 모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의실험의 내용들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현행 복지제도 중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형 사회부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공제 중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율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현존하는 여러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도의 차이 중 하나는 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와 수혜 정도가 정확히 비례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행 제도상의 여러 혜택들은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균등화 원칙으로 인해 혜택의 증가 폭이 체감한다.

기본소득 모의실험 설계의 첫 단계는 실제 복지 분야 예산 중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지출항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 및 주거급여다.

1. 모의실험 가정: 재원조달 방법

- 1단계: 복지 관련 현금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월 2.3만원/1인당)
- 2단계: 근로소득과 관련된 각종 공제의 폐지(월 9.4만원/1인당)
- 3단계: 소득세율 인상(10%p 인상 때마다 월 9.4만원/1인당)

기본소득 모의실험 설계의 첫 단계는 실제 복지 분야 예산 중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지출항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 및 주거급여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도 예산증가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설계에 있어 기본소득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 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정양육수당과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급여로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계층(농민)의 소득보전 급여의 성격을 갖는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역시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였다. 단 개인이 받는 현금급여 중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적연금(예컨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실업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설계하였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원을 기본소득의 보편성의 원칙에 가장 충실하도록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표 Ⅲ-1>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연 28.2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

〈표 III-1〉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급여

(단위: 억원)

항목	예산
현금급여	27,871
주거급여	5,511
근로장려세제	15,887
가정양육수당	12,15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724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8,450
기초연금	73,998
합계	144,597
1인당	연28.2만원 (월2.3만원)

주: 2015년 기준
출처: 저자 작성

또한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은 현물급여(in-kind transfer)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가장 큰 이유는 개개인들이 현물급여로부터 얻은 편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이다. 물론 현물급여 편익을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증가적 가정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허용하여 현실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현실성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전형성을 담보할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다.

물론 기본소득이 현물급여를 대체하지 않는 설계방식은 단지 계산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보다 본질적 이유가 있다. 기본소득이 공공서비스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OECD(2017)의 기본소득 모의실험에서 기본소득은 의료보험이나 교육시스템과 같은 현물급여는 대체하지 않았다. 반면 우파적 혹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처럼 만약 기본소득의 장점이 현물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막대한 행정비용에 있다고 본다면 현물급여 또한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이 역시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은 현물급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2단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은 현물급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가장 큰 이유는 개개인들이 현물급여로부터 얻은 편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비용공제의
측면으로 보든,
아니면 정부가 개개인에게
주는 암묵적 형태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이해하든 간에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형식의 조세지출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크게
사라지게 된다.**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와 같은 모든 공제조항을 모두 다 폐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각종 공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일종의 비용공제적 성격이다. 지출의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감경받는 법인과 달리 개인에게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조항들은 개인(혹은 가구)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공제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주는 암묵적인 보조금(implicit subsid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게 주어지는 인적 공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소득공제를 비용공제의 측면으로 보든, 아니면 정부가 개개인에게 주는 암묵적 형태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이해하든 간에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면 현재와 같은 형식의 조세지출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크게 사라지게 된다(OECD, 2017). 아울러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복잡다기한 현행 복지 및 조세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는 Atkinson(1995)이 제안한 기본소득의 설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기본소득이 모든 복지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을 대체한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모든 조세공제(tax allowance)를 폐지해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으로 만드는 안을 제안하였다.

본 모의실험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노동) 소득과 관련된 ‘모든 공제항목의 폐지’는 「소득세법」상의 ‘조세지출의 폐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되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의실험에서는 이러한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까지 다 폐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근로소득이 바로 과표가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현행 「소득세법」상의 조세지출액의 규모보다 훨씬 커진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세의 15개 조세지출항목의 총액은 16.0조원이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가정처럼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항목을 폐지한 경우 추가적으로 거두어지는 세수는 약 57.9조원 규모⁹⁾다.

9)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TAXIM model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개인당 한 달에 약 9.4만원(연간 약 113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불할 재정적 여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마련된 금액은 1인당 월 11.7만원,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40만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정부 세입과 세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없이 정부가 개인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의 최대액은 1인당 연 14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명목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누진 구조를 유지한 채 모든 과표구간에서 명목세율을 10%p 인상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약 9.4만원(연간 약 113만원) 수준¹⁰⁾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아래의 <표 Ⅲ-2>는 기본소득 시나리오별로 개인이 수령하는 기본소득의 구체적 금액과 이를 위해 필요한 소득세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표 Ⅲ-2> 기본소득 시나리오별 수급액과 명목세율

(단위: %)

과표구간	현행 세율	시나리오 1 월 11.7만원	시나리오 2 월 21.1만원	시나리오 3 월 30.5만원	시나리오 4 월 39.9만원
~1,200만원	6	6	16	26	36
~4,600만원	15	15	25	35	45
~8,800만원	24	24	34	44	54
~1.5억원	35	35	45	55	65
1.5억원	38	38	48	58	68

주: 시나리오 1~4는 모두 현금성급여의 기본소득으로의 대체와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출처: 저자 작성

2. 모의실험 방법

본 모의실험은 실제 가구가 아니라 가상가구(hypothetical household)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를 살펴볼 것인데 편의상 1인 가구는 단독가구, 2인 가구는 부부, 3인 이상 가구부터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가구에서 근로소득자는 1명으로 가정한다.¹¹⁾

[그림 Ⅲ-1]은 본 연구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가구가 아니라 가상가구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유지한 채 모든 과표구간에서 명목세율을 10%p 인상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약 9.4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10) 이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TAXIM model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제항목의 폐지로 얻어지는 금액과 소득세 명목세율을 10%p 올려서 얻게 되는 금액이 9.4만원으로 같은 데 이는 우연이다. 이 두 숫자가 같아져야 하는 이유는 없다.

11) 물론 모의실험에서 분석 목적에 따라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족도 넣을 수 있다.

모의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일한 가구를 상대로 현행 제도하의 가처분소득과 기본소득제도하의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복지제도하에서 특정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가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수혜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를 상대로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관계로 본 연구의 각종 공제 항목은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개인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인 의료비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부녀자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나 6세 이하자녀) 역시 자녀장려금을 수급받는 사람은 이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보험수혜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이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금은 대체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적이전소득에서 포함된 사회부조수혜금을 살펴보자. 현행법상 가구가 받는 사회부조수혜금의 크기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심사(means-test)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 여부와 그 수급금액은 아래에서 정의된 것처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달려 있다.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2$$

주: 1)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본 모의실험에서 개인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가구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는 모두 0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는 각 가구의 노동소득이 0원에서부터 100만원 단위로 변화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구성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모의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일한 가구를 상대로 현행 제도하의 가처분소득과 기본소득제도하의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을 살펴보고 이후에 기본소득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복지제도하에서 특정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가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수혜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는 기본소득이 빈곤층과 중위소득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구간이 아니라 소득 1분위에서 6분위까지에 속한 가구로 한정하여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III-1] 모의실험에서 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의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대보험
소득평가액	(-) 결정세액
(-) 인적공제 ¹⁾	순근로소득
(-) 연금보험료 등 ²⁾ 공제	(+) 생계급여
과세표준	(+) 주거급여
(×) 세율	(+) 근로장려금
산출세액	(+) 자녀장려금
(-) 근로소득세액공제	가처분소득
결정세액	

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중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음

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부녀자 예산증가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2) 연금보험료 등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중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의미

출처: 저자 작성

〈표 III-3〉은 본 연구에서 모의실험해 볼 모든 기본소득제도를 1인당 받게 되는 기본소득 금액과 명목세율의 변화의 조합에 따라 〈시나리오 1〉에서부터 〈시나리오 4〉로 분류한 것이다.

〈표 III-3〉 기본소득 시나리오

	기본소득 금액(1인당)	현금급여 대체 및 공제폐지 여부	명목세율 인상 폭
시나리오 1	월 11.7만원(연 140만원)	○	인상 없음
시나리오 2	월 21.1만원(연 253만원)	○	모든 구간에서 10%p 인상
시나리오 3	월 30.5만원(연 366만원)	○	모든 구간에서 20%p 인상
시나리오 4	월 39.9만원(연 479만원)	○	모든 구간에서 30%p 인상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는 기본소득이 빈곤층과 중위소득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구간이 아니라 소득 1분위에서 6분위까지에 속한 가구로 한정하여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포용성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1〉은 앞서 언급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의미하고 〈시나리오 2〉부터 〈시나리오 4〉까지는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받는 기본소득의 크기는 결국 세율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세율을 10%p 인상하고 1인당 연 253만원을 받는 〈시나리오 2〉는 ‘저부담 저급여’ 기본소득제도를, 세율 20%p 인상하고 1인당 연 366만원을 받는 〈시나리오 3〉은 ‘중부담 중급여’ 기본소득을 마지막으로 세율 30%p 인상과 1인당 연 479만원을 받는 〈시나리오 4〉는 ‘고부담 고급여’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IV. 모의실험 결과

1. 현행 제도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가처분소득의 구성

모의실험을 통해 먼저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크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자. 여기서 사용한 시장소득은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의미한다.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관계는 〈표 IV-1〉과 [그림 IV-1]부터 [그림 IV-4]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이 있는 현행 제도의 특징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표 IV-1〉은 현행 제도상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0이 되는 구간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300만원과 2,100만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각각 2,400만원과 3,4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의 50~60%가 공적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는 한계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IV-1〉은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의 관심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현금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의 한계선이 900만원과 1,400만원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포용성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부터 [그림 IV-4]는 현행 제도하의 가처분소득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그림에서 x 축은 가구유형별로 계산된 시장소득의 소득분위다(표시된 모든 소득분위는 경계소득이 아

나라 시작소득이다. 즉 x 축의 2분위는 2분위의 시작소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y 축은 가처분소득이다. [그림 IV-1]부터 [그림 IV-4]를 통해 사회부조수혜금을 받을 자격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소득 2분위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소득 3분위부터는 사회부조수혜금을 거의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가 빈곤층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현행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있는 계층, 특히 현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이는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된다).

현행 현금수당 중 자녀장려금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에 있어 사회부조수혜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4~5분위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미미하다는 데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최고 연 5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연 96만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가구가 받는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는 증가하나 그것이 가구원 수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가 빈곤층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있는 계층, 특히 현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표 IV-1〉 현행 복지제도 모의실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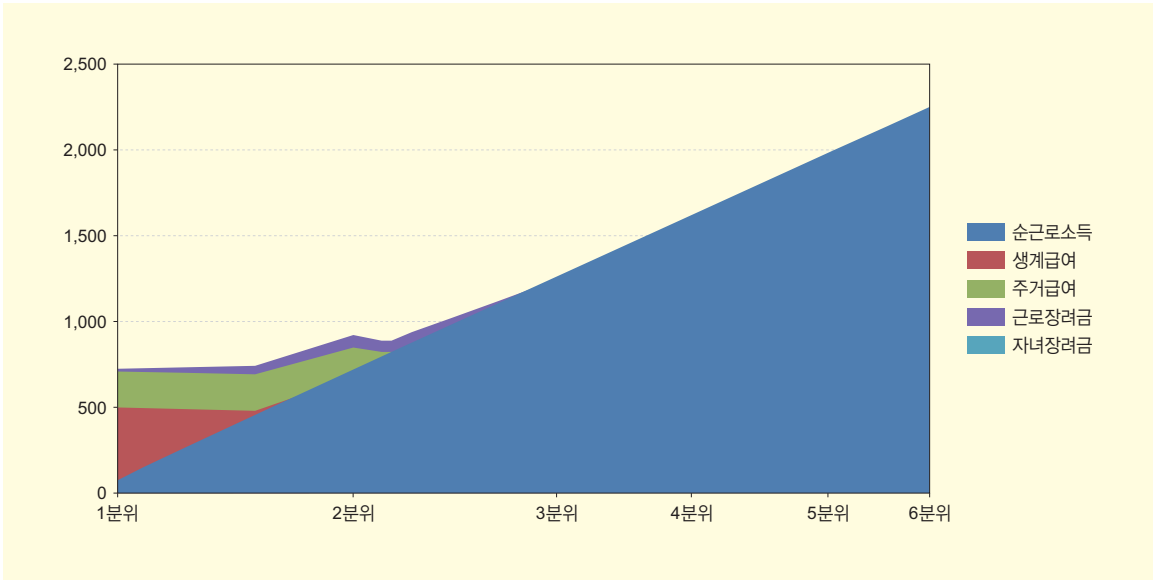
(단위: 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공적이전소득 0 구간 시작금액	1,300(2분위)	2,100(3분위)	4,000(5분위)	4,000(4분위)
생계급여 0 구간 시작금액	600(1분위)	900(1분위)	1,200(1분위)	1,200(1분위)
주거급여 0 구간 시작금액	900(2분위)	1,400(2분위)	1,800(2분위)	2,200(2분위)
근로장려금 0 구간 시작금액	1,300(2분위)	2,100(3분위)	2,100(2분위)	2,100(2분위)
자녀장려금 0 구간 시작금액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000(5분위)	4,000(4분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1] 1인 가구 가처분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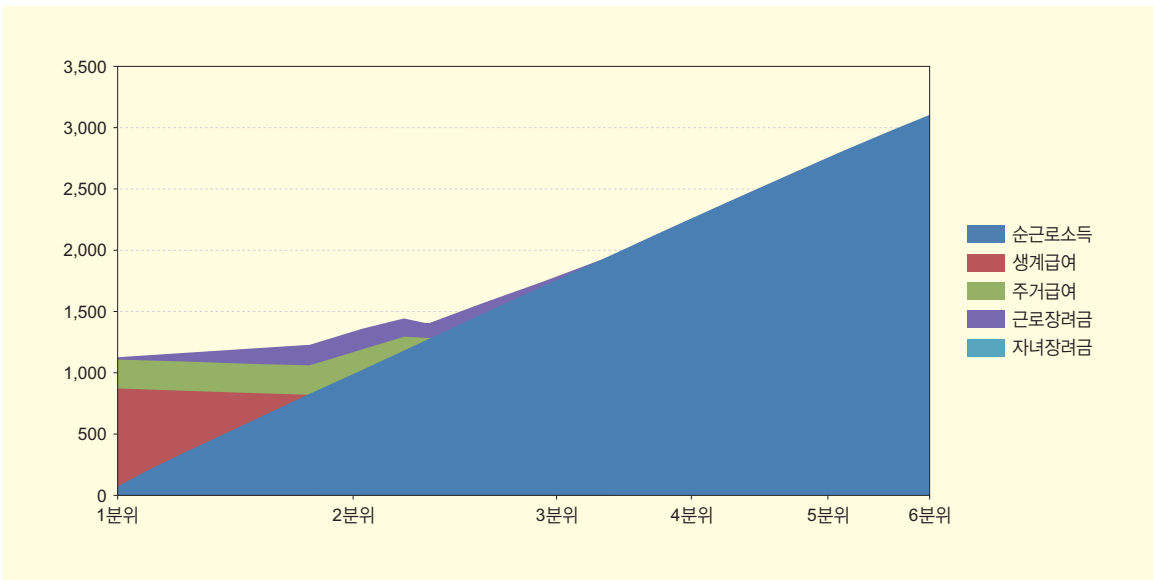
(단위: 가처분소득(만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2] 2인 가구 가처분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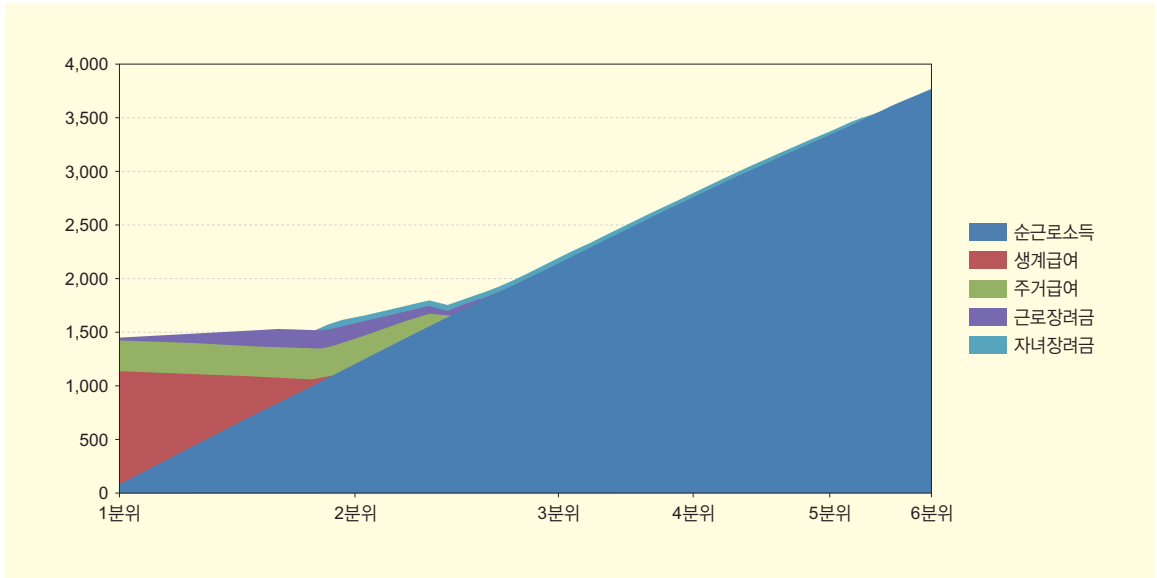
(단위: 가처분소득(만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3] 3인 가구 가처분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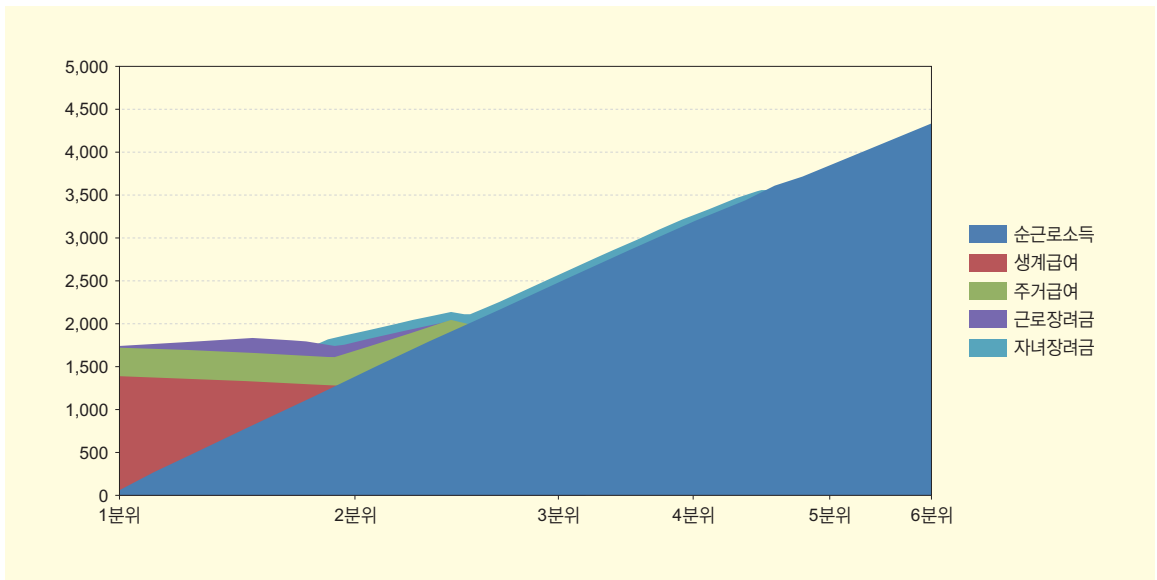
(단위: 가처분소득(만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4] 4인 가구 가처분소득 구성

(단위: 가처분소득(만원))



출처: 저자 작성

추가적 세율의
인상 없이 진행되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그 금액이 너무 미흡하여
충분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기본소득의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의 주요한 결과는 <표 IV-2>와 [그림 IV-5]~[그림 IV-8]에 나와 있다. <표 IV-2>에는 개별 가구의 현행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도하의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뒤 기본소득제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소득구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2>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의 가처분소득 비교

(단위: 만원)

	가구유형	시나리오 1 월 11.7만원 (연 140만원)	시나리오 2 월 21.1만원 (연 253만원)	시나리오 3 월 30.5만원 (연 366만원)	시나리오 4 월 39.9만원 (연 479만원)
현행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구간	1인 가구	900-1,700 (2-3분위)	900-1,400 (2-3분위)	900-1,300 (2분위)	900-1,300 (2분위)
	2인 가구	1,400-2,800 (2-4분위)	1,200-2,500 (2-3분위)	800-2,400 (1-3분위)	400-2,400 (1-3분위)
	3인 가구	1,700-4,800 (2-6분위)	1,300-3,600 (2-4분위)	700-3,500 (1-4분위)	200-3,500 (1-4분위)
	4인 가구	1,800-5,500 (2-6분위)	1,100-5,300 (2-6분위)	600-5,000 (1-6분위)	0-4,900 (1-5분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5]는 <시나리오 1>의 모의실험 결과가 담겨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IV-6], [그림 IV-7], [그림 IV-8]은 각각 <시나리오 2~4>까지를 토대로 한 모의실험 결과다. x 축은 가구의 시장소득이 어떤 분위에 속하는지를 나타낸다. y 축은 '소득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으로 정의된다. 각각의 그림에 그어져 있는 평행선은 소득비율이 100%인 선을 의미한다.

예컨대 1인 가구의 소득이 소득 3분위에 속하고 있다고 하자. 이 가구의 소득비율 곡선이 그 평행선 위에 있다면 기본소득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현행 제도하의 가처분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 3분위의 1인 가구는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모의실험을 통해 앞서 제시된 명제 1~3까지의 타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산증가적으로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앞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시나리오 1>의 수급액은 1인당 연 140만원에 그친다는 점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 크게 미달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의 명제가 도출될 수 있다.

명제 0

추가적 세율의 인상 없이 진행되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그 금액이 너무 미흡하여 충분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명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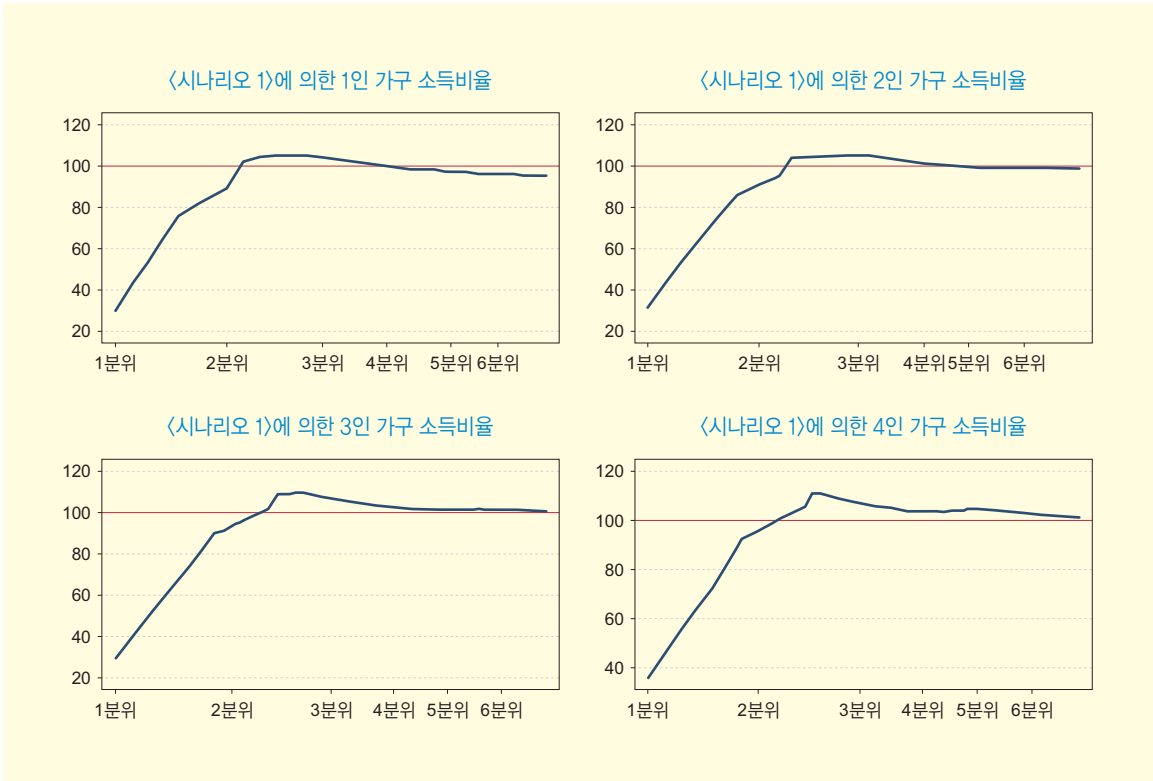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저소득계층, 특히 소득 최하층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앞의 <표 IV-2>와 [그림 IV-5]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 <시나리오 1>하에서 소득 1분위와 2분위 일부는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소득 구간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9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에 있는 가구이며 소득 2~3분위 가구에 속한다. 즉 소득 사다리의 맨 밑에 있는 최하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 일부 계층 중 1인 가구는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된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소득 1분위와 2분위 일부는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반면에 3~6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한다.

[그림 IV-5] 기본소득 <시나리오 1>에 의한 가구별 소득비율

(단위: %)



주: 1. 기본소득 <시나리오 1>의 기본소득금액은 월 11.7만원, 연 140만원. 기존 현금급여 기본소득 대체+각종 공제제도 폐지+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없음
 2. x축: 소득분위(시장소득기준, 경계소득기준)
 y축: 소득비율=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

출처: 저자 작성

위의 [그림 IV-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x축은 시장소득기준으로 해당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를 의미한다. y축은 소득비율을 의미하는데 소득비율은 현행 제도 대비 기본소득제도하의 가처분소득 비율로 정의된다. 1인 가구의 소득비율은 그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상의 붉은 선은 소득비율이 100%인 선을 의미한다. 소득비율이 100%인 가구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나 기본소득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동일한 가구를 의미한다. 즉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관점에서 두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선호가 없다. 그러나 예컨대 <시나리오 1>의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1분위 가구의 소득비율 곡선이 100%선 아래에 위치해있다. 이는 1분위에 속한 1인 가구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1>하에서의 소득 3~4분위에 속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비율선이 100%선 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소득 3~4분위에 속한 4인 가구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제도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인 가구에서는 1인 가구에 비해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소득구간이 늘어난다.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1,400~2,800만원, 3인 가구는 1,700~4,800만원, 4인 가구는 1,800~5,500만원이다. 이는 가구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2분위부터 6분위사이에 속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본소득의 액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차상위계층인 2분위 일부와 3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난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위계층 가구에서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인 가구의 경우처럼 최하층이 제도로부터 나온 수혜에서 배제되는 집단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2분위 상위구간부터 6분위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가? 혹은 왜 최하층(즉 소득 1분위와 2분위 하위구간)은 이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안전망 혜택의 대부분이 소득분포의 왼쪽 끝에 있는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사회안전망에서 핵심적 빈곤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소득 2분위 계층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무한 계층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가구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기준으로 2분위 계층에 속하는 1,000만원의 단독가구를 보자. 이들이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가능한 공적이전소득은 53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전부다. 이는 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4인 가구를 살펴봐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 2분위 계층에 속하는 연소득 2,100만원의 4인 가구의 경우를 보자. 이러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총액은 227만원(주거급여 127만원+자녀장려금 100만원)으로 이는

**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2분위 상위구간부터
6분위까지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가?
혹은 왜 최하층은
이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정도가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중위소득계층의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조세지출편익뿐인데,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상실되는 조세지출편익보다 기본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가처분소득의 10.1% 수준이다.

이러한 중위소득계층의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공적이전소득은 없고 조세지출 편익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5분위 경계소득은 각각 4,200만원과 4,900만원이다. 이 경우 이들이 받는 조세지출 편익은 각각 375만원과 428만원이다. 이들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종 공제제도의 폐지로 인해 375만원과 428만원의 조세지출편익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420만원(140×3)과 560만원(140×4)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상실하는 조세지출 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현재보다 늘어난다.

명제 2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최하층도 세율과 기본소득 금액의 조합에 따라 현행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상위소득계층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이라 할 지라도 '저부담 저급여' 유형의 기본소득인 <시나리오 2>하에서 저소득층 중 소득분포 가장 밑에 있는 소득 1분위에 속한 빈곤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제 1을 이끌어낸 논리와 유사하다. 현행 제도하의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이 바로 이들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부담 저급여'로 설계된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규모는 기존 제도하에서 빈곤층이 누리던 공적이전소득의 크기보다 작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규모가 커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중(고)부담-중(고)급여 성격의 기본소득인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가 그 좋은 예다. <표 IV-2>와 [그림 IV-7]~[그림 IV-8]은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서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도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점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 금액이 커지면서(<시나리오 3>의 경우 1인당 연 366만원, <시나리오 4>의 경우 1인당 연 479만원) 이들 가구가 기본소득제도로 이행하면서 상실하게 되는 현행 제도상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 편익을 만회하게 되는 것이다.

연 시장소득 900만원의 2인 가구(이들은 소득 1분위에 속해 있다)의 사례로 설명해보자.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이들이 받는 공적이전소득의 총액은 402만

원이다(주거수당 232만원+근로장려금 170만원). 이제 이 모든 공적이전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 사회를 생각해보자. 기본소득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서 이들이 받는 기본소득의 연간 규모는 각각 732만원(366×2 , <시나리오 3>의 기본소득)과 958만원(479×2 , <시나리오 4>의 기본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보다 기본소득의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이전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 사회에서 연소득 900만원의 2인 가구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각종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공제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소득 900만원의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34만원(<시나리오 3>)과 324만원(<시나리오 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체제로 이행할 경우 732만원과 958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다시 이들은 과거에 받던 402만원의 공적이전소득의 손실을 경험해야 하고 동시에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각각 234만원과 324만원 납부해야 한다. 이 2인 가구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시나리오 3>에서 $732 > 636 (= 402 + 234)$ 다시 <시나리오 4>에서 $958 > 726 (= 402 + 324)$ 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에서는 기본소득 금액을 올리기 위해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소득세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20%p 올라가야 하고 <시나리오 4>의 경우는 그 수치가 30%p로 더 크다. 그 결과 <시나리오 4>의 경우 최고 과표구간의 한계세율이 68%에 이르게 된다. 또한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기본소득 시나리오는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인의 세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중(고)급여-중(고)복지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가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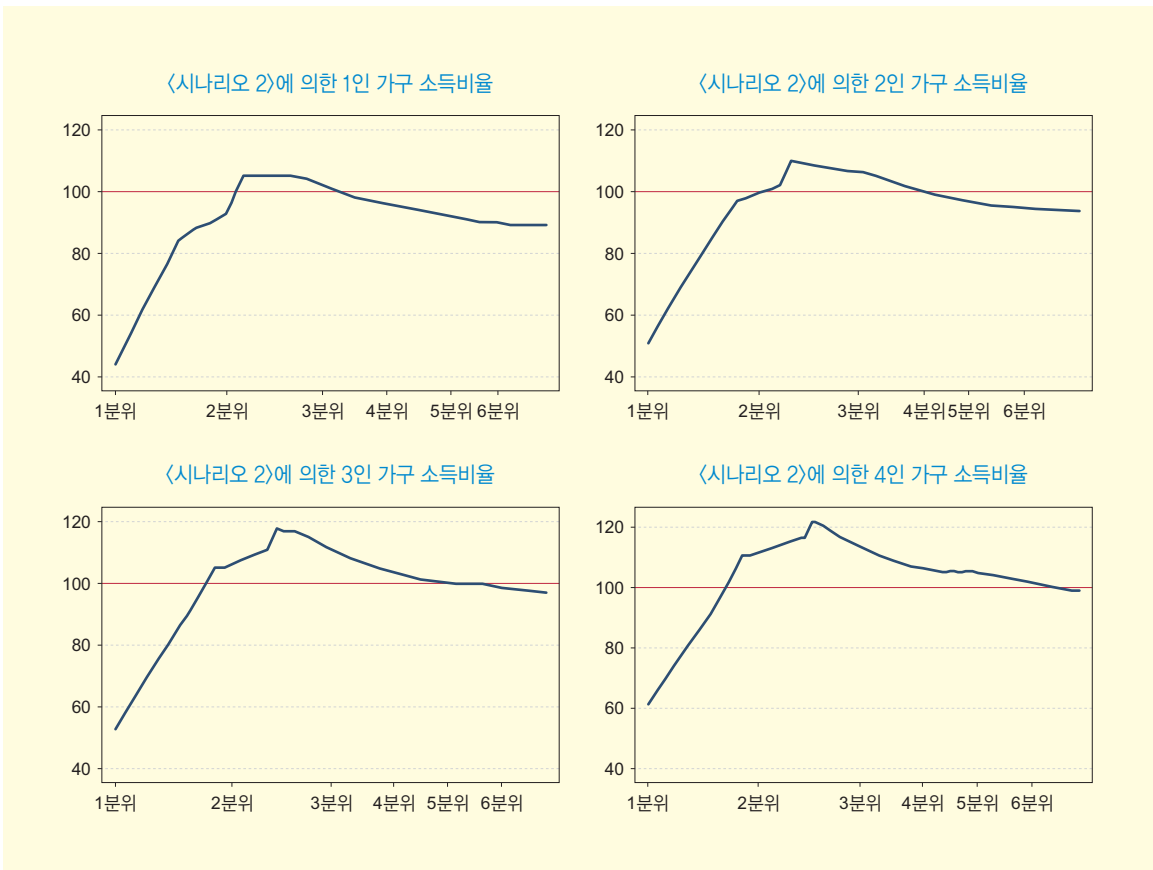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에서 왜 상위계층은 제도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지 설명해보자. 이는 기본적으로 명목세율이 크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도하에서는 모든 공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보다 크게 증가한다. 특히 모든 기본소득 시나리오에서 소득세는 누진세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나 중위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결국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얻는 편익을 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림 IV-5]~[그림 IV-8]에서 보듯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소득비율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에서
왜 상위계층은 제도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가?
모든 기본소득
시나리오에서 소득세는
누진세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나
중위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결국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얻는
편익을 넘게 된다.**

의 모습은 역 U자(inverted U-shape)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비율이 정점에 이르는 소득분위는 시나리오나 가구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정한 구간이 지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림 IV-6] 기본소득 <시나리오 2>에 의한 가구별 소득비율

(단위: %)



주: 1. 기본소득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금액은 월 21,1만원, 연 253만원. 기존 현금급여 기본소득 대체+각종 공제제도 폐지+소득세 명목세율 모든 구간에서 10%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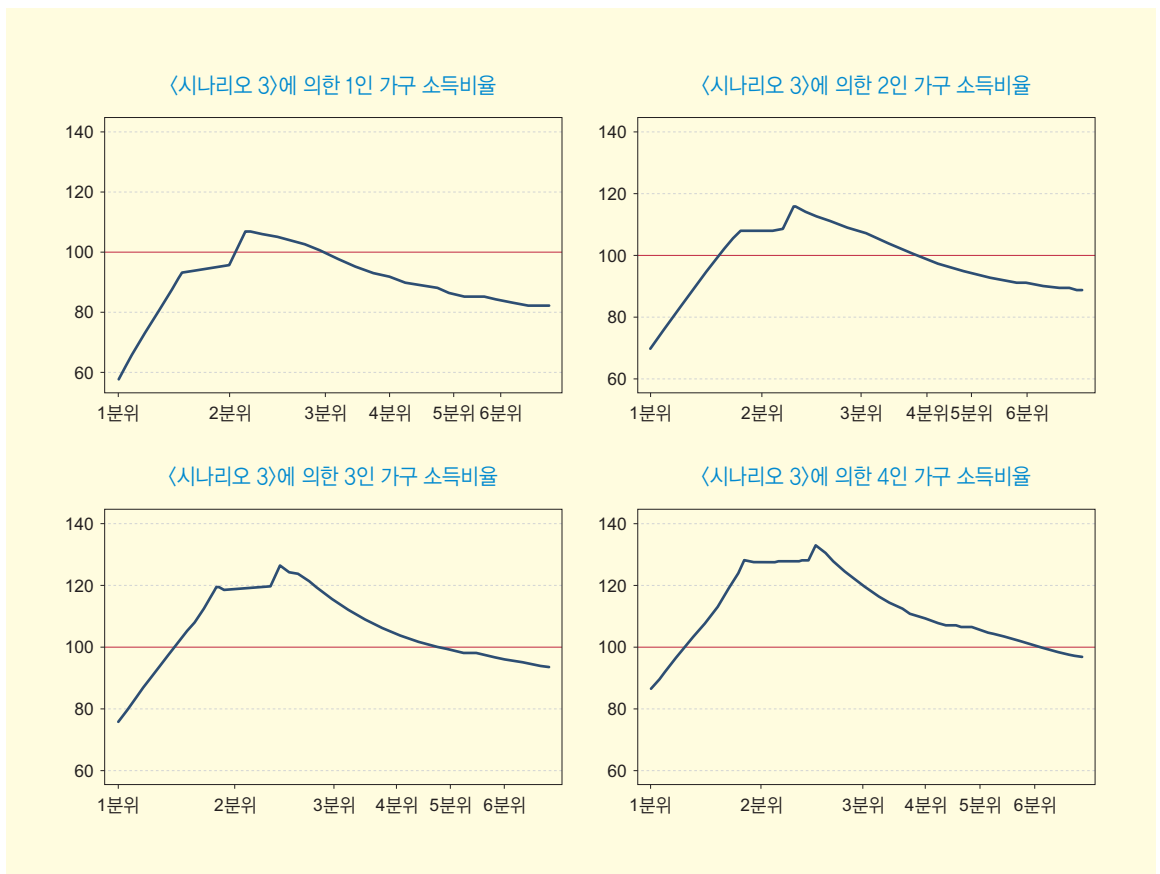
2. x축: 소득분위(시장소득기준, 경제소득기준)

y축: 소득비율=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7] 기본소득 <시나리오 3>에 의한 가구별 소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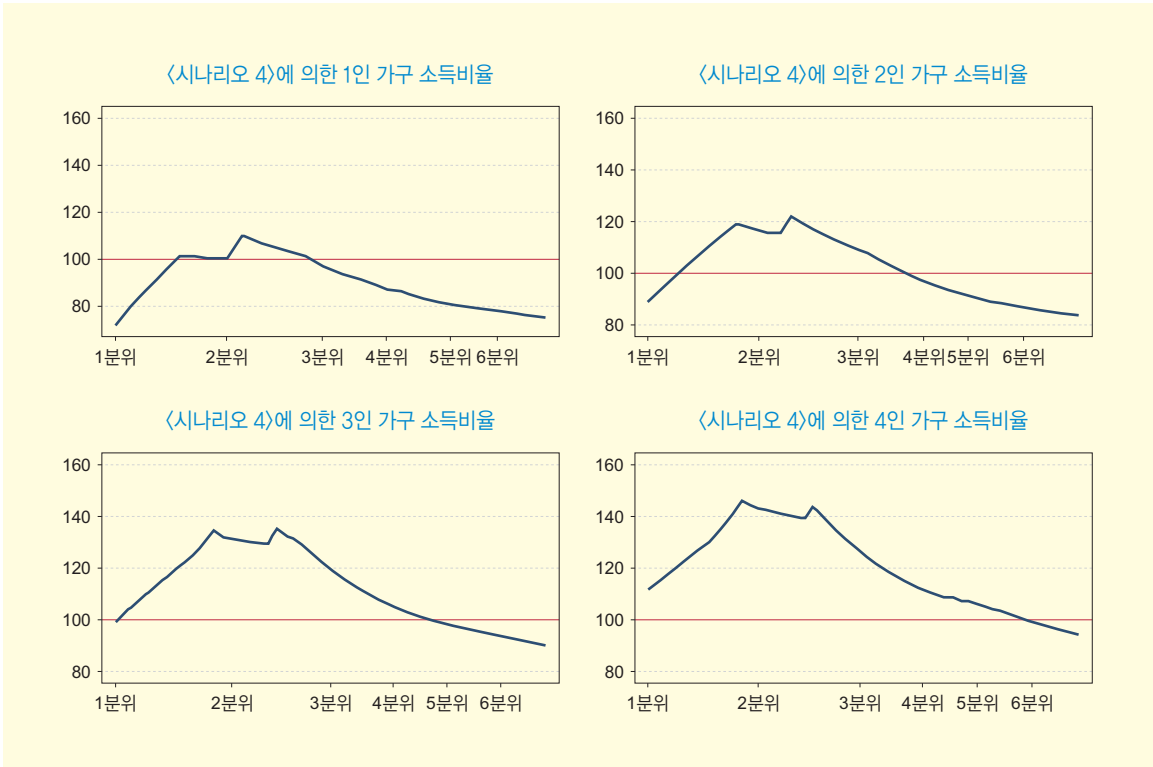
(단위: %)



주: 1. 기본소득 <시나리오 3>의 기본소득금액은 월 30.5만원, 연 366만원. 기존 현금급여 기본소득 대체+각종 공제제도 폐지+소득세 명목세율 모든 구간에서 20%p 인상
 2. x축: 소득분위(시장소득기준, 경제소득기준)
 y축: 소득비율=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8] 기본소득 <시나리오 4>에 의한 가구별 소득비율

(단위: %)



주: 1. 기본소득 <시나리오 4>의 기본소득금액은 월 39.9만원, 연 479만원. 기존 현금급여 기본소득 대체+각종 공제제도 폐지+소득세 명목세율 모든 구간에서 30%p 인상
 2. x축: 소득분위(시장소득기준, 경계소득기준)
 y축: 소득비율=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현행 제도하에서의 가처분소득
 출처: 저자 작성

명제 3

기본소득의 수준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하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시나리오하에서 현행 제도보다 기본소득하에서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표 IV-2>에서 나타난 것처럼 1인 가구에서는 주로 차상위 구간에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해 3~4인 가구부터는 차상위 및 중위소득 구간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도하의 이전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가구의 구성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이나 조세지출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편익은 체감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행 제도 설계에 있어 한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만약 현행 복지제도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 주어지는 이른바 데모그란트(demogrant; 사회수당)적 성격의 제도가 많을수록 기본소득으로 이전하는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결과에 대한 추가해석

앞 절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행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도(그것이 예산중립적이든 혹은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이든 상관없이)로 대체할 경우 빈곤층, 특히 소득분포의 맨 밑에 있는 소득 1분위~2분위 가구는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을 소득 양극화 시대에 요구되는 빈곤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의 통념과 배치된다. 왜 이러한 역설(paradox)이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적 특성과 재원조달 방법 때문에 발생한다.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은 예산증가적인 재원 없이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재원을 사회구성원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즉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수준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선별적 복지제도(categorical welfare)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를 받던 빈곤층의 경우 기본소득제도하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만약 빈곤계층이 받는 기본소득 금액의 수준을 이들이 그 이전의 선별적 복지제도하에서 받던 급여 수준으로 맞추고 싶다면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 즉 예산증가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빈곤계층 역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왜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가 기본소득제도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중위소득계층, 특히 소득 4~6분위의 가구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

만약 빈곤계층이 받는 기본소득 금액의 수준을 이들이 그 이전의 선별적 복지제도하에서 받던 급여 수준으로 맞추고 싶다면 세율을 올려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빈곤계층 역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제도가 포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보다 많은 계층을 복지 프로그램안으로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 기본소득의 액수를 올리게 되면 예산증가적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하위소득계층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준이 매우 낮다. 만약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이 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이는 기본소득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을 상쇄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설계함에 있어 정책당국자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포용성이나 충분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강신욱, 2015). 즉 도움이 필요한 계층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 일부를 복지망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 역시 지나치게 낮아 이들을 빈곤에서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현행 제도가 포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보다 많은 계층을 복지 프로그램안으로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 기본소득의 액수를 올리게 되면 예산증가적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하위소득계층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복지제도가 현행 제도에서 기본소득제도로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분위와 가구유형별로 제도의 수혜군과 소외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목세율의 인상 없이 기존 현금성 이전 지출이나 조세지출의 폐지로부터 조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기본소득 금액은 1인당 약 월 12만원(연 140만원)이다. 이는 중위소득의 약 6(1인 가구)~11%(4인 가구)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의 인상, 즉 국민의 조세 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와 소외군은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과 중위소득계층은 예산중립적 기

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반면에 빈곤층, 특히 소득 최하층의 가치분소득은 감소한다. 즉 예산중립적 기본소득하에서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들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의 정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현행 사회안전망의 혜택의 대부분이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형태의 현금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셋째 명목세율을 인상하여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 금액을 올릴 경우 예산중립적 기본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을 통해 현행 복지제도보다 가치분소득이 증가하는 계층이 늘어난다. 특히 이 경우는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소득 최하층,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계층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상당한 수준의 세율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소득수준의 가구일지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가 되는지 부담자가 되는지가 달라진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가구단위로 주어지는 반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기본소득제도하에서 수혜자가 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그동안 우리사회의 복지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차상위 및 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목도되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악화의 특징 중 하나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계층의 소득도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설계함에 있어 빈곤층뿐 아니라 그보다 위에 있으나 여전히 소득이 정체된 계층을 상대로 한 폭넓은 소득보전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의 사회후생적 측면이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새롭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두 번째,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OECD, 2017). 일반적으로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 빈곤대책은 일정한 기준의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현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그동안 우리사회의
복지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차상위 및
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단지 소득수준에 의해 단일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구 유형과 기본소득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의 크기에 따라 기본소득제도가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의 후생을 높일 수도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잘 부합하는 복지제도는 아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도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단지 소득수준에 의해 단일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구 유형과 기본소득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의 크기에 따라 기본소득제도가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의 후생을 높일 수도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후속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노동공급의 결정을 내생화하는 모델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모의실험에서는 단순화된 가구구성과 가구소득만을 고려하였다. 가구의 재산보유액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설사 재산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성으로 인해 현재 공적이전 급여의 수급자 분포를 과다(혹은 경우에 따라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까지는 아니어도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상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 구성에서 가구주의 연령이나 종사상 지위에 대한 구분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 결과상의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현물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축소되는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의 문제다. 이는 두 가지 층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성 원칙은 기존 공공부조가 만들어 낸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원의 조달을 위해 세율인상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즉 세율 변화에 따른 근로 유인의 변화-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최한수(2017b)¹²⁾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최한수(2017b)는 기본소득제도는 저소득계층과 중위소득계층에 있는 경제주체의 경우에 노동시장참여의 의사결정이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단 이러한 결론은

12) 최한수(2017b)는 기본소득제도가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경제주체의 노동공급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단한 조세-급여 모델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노동공급탄력성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상가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구의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소득이 현재의 소득불평등(예컨대 지니계수로 측정된 불평등정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패널이나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같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의실험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의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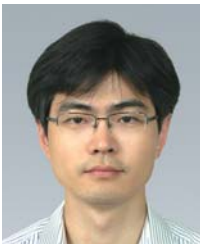
기본소득제도는
저소득계층과
중위소득계층에 있는
경제주체의 경우에
노동시장참여의
의사결정이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효율적인 제도다.

〈참고문헌〉

- 강신욱,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오종현·강성훈·신상화,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재정 효과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최한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제25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a.
- _____,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b.(발간예정)
- Atkinson, Anthony Barnes, “Public economics in action: the basic income/flat tax proposal,” *OUP Catalogue*, 1996.
- Borjas, George J, “Labor Economics,” 6th edition, McGraw-Hill (강창희, 박철성, 송헌재, 『노동경제학』, 시그마 프레스), 2014.
- Marinescu, Ioana, *No Strings Attached: The Behavioral Effects of U.S.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s*, New York, NY, USA: Roosevelt Institute, 2017.
-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2017.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I. 서론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hinsan6@kipf.re.kr)

필자는 2015년 두 편의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거래수단이 등장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주목하였던 암호화폐 거래의 낮은 거래 수수료와 이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발전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암호화폐 매매 자체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이 사회적 이슈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살펴보면, 2017년 초 1천달러 수준에 머물던 가격은 2017년 7월 2,50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2017년 12월 1만 9천달러까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뒤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컸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국내 거래소 이용 제한,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과세안 검토, 거래소 보안 체계 점검 등의 조치들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 폐쇄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의 원천 차단 방안 또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지닌 측에서는 정부가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잣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측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의 사회적 효용이 크지 않고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답하려 노력하였다. 우선, 개방적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기술이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암호화폐 가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한다. 걱정 암호화폐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당하는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일정한 관련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맞춰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암호화폐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고 유형화한다. 제Ⅲ장에서는 개방형 블록체인의 구조적 특징과 암호화폐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걱정 암호화폐 가치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간략히 논하도록 하겠다.

Ⅱ.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및 발전 현황

암호화폐 기술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정보의 덩어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하여 보안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Haber and Stornetta(1991)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제시된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혹은 개발자 집단)가 발표한 2008년의 논문이 최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논문에서 전자적 화폐의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한 뒤 분산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이 실제 적용되어 2009년 초 비트코인 시스템의 형태로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2009년에 제시된 비트코인 시스템의 블록체인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Nakamoto(2008)는 초록에서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이 글은 개방적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기술이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암호화폐 가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한다.**

현재의 금융거래는 중개인이 개입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 방식은 비효율성을 일으킨다. 따라서 중개인을 배제한 채 전자적으로 화폐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신뢰 형성이 필수인데, 이 문제를 기존에 존재하던 블록체인의 개념을 빌려 해결한 것으로 Nakamoto(2008)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cash”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의 금융거래는 제3의 금융기관 혹은 중개인(Middlemen)이 개입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 방식은 중개수수료의 발생, 거래 속도의 지연 그리고 거래 정보의 집중이라는 비효율성을 일으킨다.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중개인을 배제한 상태로 전자적으로 화폐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인데, 이 신뢰의 문제를 기존에 존재하던 블록체인의 개념을 빌려 해결한 것으로 이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2009년 초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구현되었고, 이 방법이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¹⁾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해당 코인(프로그램)별로 다르나, 근본적인 개념은 여전히 Nakamoto(2008)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Nakamoto(2008)의 개념을 빌려 블록체인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Nakamoto(2008)가 제시한 블록체인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을 모은 블록은 앞서 존재하는 블록들의 연결체에 다시 한번 결합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을 형성한다. 즉, 새로운 거래들이 기존 거래들의 집합체에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거래들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과거 시점의 거래를 취소하거나 삭제하려면 그 시점 이후의 모든 거래 역시 취소한 뒤 재인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거래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형성된 블록체인을 Peer-to-Peer 형식으로 배포하기에 한번 기록된 거래 정보를 변조하려는 악의적 사용자가 공격 지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과 후술할 ‘채굴’이라 불리는 인증작업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높이는 작업은 단순 연산을 반복하여 인증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들을 인증자 혹은 채굴자라 부르게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에 채굴 작업 외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 대부분을 인증작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인증작업은 연산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고 지속해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함축된다. 인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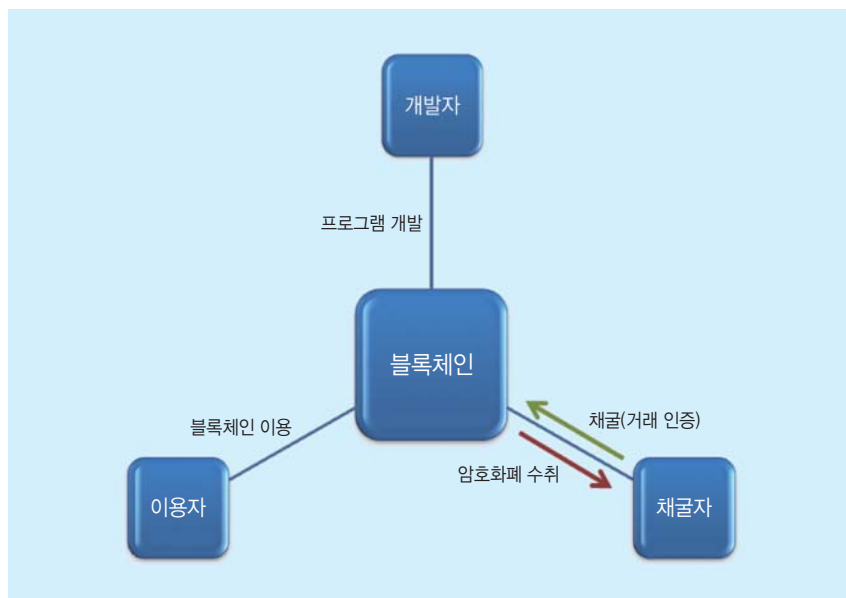
1)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단어임

증작업에 적합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비 구매비와 장비를 구동시키는 데에 드는 전기료를 인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인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체계를 두고 있다. 거래를 인증시킨 인증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일반화한 뒤 도식화하면 [그림 II-1]과 같다. 이 그림은 특정 블록체인 시스템을 크게 세 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블록체인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 프로그램 개발자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거래를 인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증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당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그림 II-1] 블록체인의 구성



출처: 저자 작성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인증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체계를 두고 있다. 거래를 인증시킨 인증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다.

인증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인증용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인증법,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지정된 단말기들을 통해 거래를 인증하는 것이다. 전자를 개방형 블록체인, 후자를 폐쇄형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기본 프로그램 개발자 집단은 해당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은 거래가 한 번에 인증되는지, 인증의 주기는 얼마인지, 인증 과정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증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는 현재 Wladimir J. van der Lann, Jonas Schnelli, Marco Falke 3명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²⁾

다음으로, 거래를 인증하는 인증자들이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증자들은 새로이 생성된 거래들을 사전에 협의된 방식에 따라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증자들은 다시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인증용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의 인증법이 있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지정된 단말기들을 통해 거래를 인증하는 블록체인의 인증법이 존재한다. 전자를 이용하는 블록체인을 대개 개방형 블록체인이라 부르며 후자의 방식을 택한 블록체인을 폐쇄형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표 II-1〉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

	개방형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
참여자	누구나 작업 증명 및 거래 승인 당사자로 참여 가능	허가받은 사용자만 참여 가능
특징	거래정보 검증 및 승인 등을 위한 시스템이 복잡하여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 증명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장점	안정성, 신뢰성, 익명성, 투명성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 빠른 처리 속도, 참여자 식별 가능
단점	느린 처리 속도, 확장성 제한	개방형 블록체인에 비해 낮은 보안성
활용 사례	암호화폐류 블록체인	각종 산업용 블록체인류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존재한다. 화폐 플랫폼을 목적으로 구축된 블록체인의 경우 결제 혹은 송금의 편의성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 존재하는 암호화폐 수령인과 지급인 모두 암호 화폐를 통해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볼 수 있다. 특정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앱 성격의 블록체인의 경우 정해진 물품을 매매하는 거래에 참여

2) Cointelegraph, "Who Created Bitcoin: Long Story Short," 2017.7.17.

하는 이들을 이용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활용

가. 개방형 블록체인의 발전

Tapscott and Tapscott(2017)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 중 하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으로 개방성(Openness), 분산화(Decentralization), 그리고 세계적 확산성(Global inclusion) 등을 꼽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집중성, 폐쇄성, 배제성, 수정 가능성 등을 특성으로 갖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분산성, 개방성, 확산성 및 불변성을 갖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활용할 경우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가 담보되는 다양한 거래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가 담보되는 거래들의 생성”은 개방형 블록체인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들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기에 거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거래자들을 잇는 중개상(Middlemen)의 존재는 산업의 종류와 크기에 무관하게 널리 존재한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경우 거래자들의 정보를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여 줄 중개인이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중개상의 예는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업무와 더불어 판매자가 실제 해당 물건의 법적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여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동산 물건들의 소유권 정보가 특정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다면 굳이 다른 공증기관의 신뢰를 빌리지 않고서도 거래 당사자 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금융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간 화폐 거래가 발생할 때 전통적 금융기관에서 양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이를 이체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블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가 담보되는 거래들의 생성”은 개방형 블록체인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들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기에 거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인을 없앨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는
지점에 집중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정보를 탈취
혹은 변조하려 시도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록체인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중개인을 없앨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는 지점에 집중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정보를 탈취 혹은 변조하려는 시도가 매우 어려워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중 과반 이상의 블록체인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변조해야 하기에 블록체인 인증자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실질적인 해킹 위협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기존 경제 체계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중개인들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기술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많은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속도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등 중개인이 배제됨에 따른 경제적 효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술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 결과 1,300여 종이 넘는 실험적 암호화폐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일부 개방형 블록체인들의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목표로 두었던 화폐적 가치의 이전이 아닌 프로그램의 안정적 구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등 블록체인 사용 목적 또한 다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실험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암호화폐를 결제수단 혹은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거래에서 일부 활용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여전히 작다. 무엇보다 해당 거래들을 중개하는 중개서비스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중개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³⁾

나. 폐쇄형 블록체인의 발전

현재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아닌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활용될 여지가 있는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을 산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주로 금융, 보안, 유통 및 물류, 공공 부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업은 블록체인 기술 중 분산원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

3) 가령, 가맹점들에게 암호화폐 결제를 대행해주는 Bitpay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체계를 Bitpay를 통한 결제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중개인 배제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금융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금융업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융업계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다수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관하게 하는 구조인데, 금융거래의 기밀성을 고려할 때 이를 금융기관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 산업은 블록체인의 여러 특성 중 분산원장에 중점을 두어 폐쇄형 블록체인을 구성한 뒤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적인 예로 핀테크 스타트업체인 R3에서 개발 중인 Corda 플랫폼을 꼽을 수 있다.⁴⁾⁵⁾ Corda 플랫폼은 금융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산원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분산원장 기술 활용에 더 적합하다. 기존에 개별 금융기관별로 보관하던 자산 발행 기록, 고객 관련 정보, 인증 관련 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속도와 보안성을 함께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R3의 Corda 플랫폼 컨소시엄에는 신한, 농협, 하나 등의 국내 금융사를 포함한 약 70여 개의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안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을 활용하여 IoT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IBM은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플랫폼인 ADEPT(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를 개발 중이고 Cisco의 경우 커넥티드 자동차에 블록체인 인증 솔루션을 결합하여 보안 위협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⁶⁾

물류 및 유통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유통되는 물품의 과정을 추적하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IBM의 경우 중국 월마트와 제휴하여 중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소비자가 생산지 및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⁷⁾ Maersk Line의 경우 IBM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화주의 물건 발주에서부터 선적, 운송, 세관 도착 등의 전 과정을 해운사, 항만, 세관 등 관련 주체와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⁸⁾ 국내에서도 삼성SDS에서 이와 유사한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⁹⁾

금융 산업은 블록체인의 여러 특성 중 분산원장에 중점을 두어 폐쇄형 블록체인을 구성한 뒤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https://www.corda.net/>
 5) 녹색경제, 「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상반된 시각」, 2017.12.29.
 6) Tech M, 「IoT인증에서 장외주식 거래까지 활용 확산」, 2017.3.23.
 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제2017-004호, 2017.9.22.
 8) Forbes, "IBM And Maersk Apply Blockchain To Container Shipping," 2017.3.5.
 9) 『머니투데이』, 「삼성SDS, 물류 혈맥,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잡겠다」, 2017.12.21.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도
진행 중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전자 정부 구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도 진행 중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전자 정부 구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가령, 출생자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x-road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 위조나 도용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¹⁰⁾ 미국 공화당의 경우 2016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유타주 당내 경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한 바 있다.¹¹⁾ 국내에서도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 시범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¹²⁾

〈표 II-2〉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

구분		블록체인 기술 활용 내용
플랫폼	Corda	자금 송금,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은행들이 참여하여 공동 개발 중
	ADEPT	IBM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플랫폼
IoT	Cisco	커넥티드 자동차에 블록체인 인증 솔루션을 결합하여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춤
유통, 물류	IBM, 월마트	중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추적
	Maersk Line	화주의 물건 발주부터 선적, 운송, 세관 도착 등의 과정을 해운사, 항만, 세관 등 관련 주체와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중
공공 분야	에스토니아	출생자 정보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 관리하여 개인 정보 위조나 도용 문제를 해결
	미국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실시
	한국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출처: 본문에서 각각 명시한 출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Tech M, 「비트코인 열풍으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 2018.1.1.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Insight Report』, 2016-03, 2016.5.31.
 12) 『아이뉴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2017.8.31.

Ⅲ.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

이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고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기존 경제 체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재까지 큰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방형 블록체인의 활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암호화폐 가치는 급등하는 모순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개방형 블록체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암호화폐 적정가치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1. 개방형 블록체인 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가.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

개방형 블록체인이 갖는 구조적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의 인증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구조는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 신뢰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거래 인증 및 유지를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견 모순된 이 구조는 거래 인증의 대가로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갖기에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전자 정보 덩어리인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이들은 해당 개방형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이 두 수요 중 압도적인 것은 투자 목적의 구매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환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암호화폐 가치 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용자 A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일 블록체인 이용자 B에게 암호화폐를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뒤
남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은 크게 두 부류의 집단의 수고 덕에 창출된다. 하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자 집단이며 다른 집단은 거래 인증을 맡은 채굴자 집단이다. 이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기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개발자 집단이 아닌 채굴자들이다.

매개로 송금하는 경제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A가 B에게 송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송금법이 그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전형적 송금법을 사용할 경우 대개 2~3일가량 소요되며 송금은행과 수신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여러 경제적 비효용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A는 자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통화를 코인으로 환전한 뒤 이를 B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고, 이를 B가 다시 자국 법정통화로 환전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이와 같은 거래는 수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드는 수수료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그것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법정화폐 기준)와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암호화폐 기준)를 지급한다. 이 중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중개소의 중개수수료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크기의 송금 수수료만이 해당 거래의 비용이 된다.

금융기관을 거치는 전형적 방식의 경우 훨씬 큰 수준의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하며 송금이 완료되는 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용 가치는 1) 송금 수수료의 절약분과 2) 송금 시간의 절약분의 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경제적 효용은 법정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제적 효용은 크게 두 부류 집단의 수고 덕에 창출된다. 하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자 집단이며 다른 집단은 거래 인증을 맡은 채굴자 집단이다. 이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기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개발자 집단이 아닌 채굴자들이다. 채굴자들은 거래 인증의 대가로 암호화폐 신규 생성분(신규 화폐공급분)과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를 수취한다. 신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 경우 신규 블록 내에 존재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더불어 주조차익을 채굴자 집단이 가져가는 것이다.

개발자 집단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가 많아진다 하여도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을 수취하지 않는다. 대신에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시기에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얻는다. Initial Coin Offering(ICO)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개발자 집단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투자

자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 투자금을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암호화폐로 수취하고 그 대가로 신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을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 하나의 화폐 단위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경우 경제적 보상이 암호화폐로 지급되기에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경우 경제적 보상이 암호화폐로 지급되기에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표 Ⅲ-1> 개방형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과 비용

구분	경제적 효용	비용
이용자	블록체인 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 및 시간 절약분	송금 수수료
	법정화폐 기준	암호화폐 기준
개발자 집단	ICO를 통한 경제적 이윤	개발 비용
	암호화폐 기준	법정화폐 기준
채굴자	일정 확률로 주어지는 신규 발행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합계액	장비 구입비 채굴 전기료
	암호화폐 기준	법정화폐 기준

출처: 저자 작성

현재 암호화폐 가격 수준은 모든 이용자 집단에서 경제적 효용이 비용보다 클 수 있게 형성되어 있다.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환산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은 최근의 현상은 더 많은 개방형 블록체인의 개발과 더 많은 채굴 연산력의 투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암호화폐 가치가 향후 급락하게 될 경우 다수의 채굴자가 채굴 작업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구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이용자가 블록체인 이용에 지급하는 비용이 개발자 및 채굴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용과 불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사용을 통해 높은 경제적 효용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비용만을 지급한다. 낮은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면 거의 무료로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개발자 및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이용을 통해 경제적 효용을 누리는 이용자들로부터가 아닌 거래소 시장에 유입되

현재 개방형 암호화폐
시스템이 취하고 있는
운용 방식은 구조적으로
큰 모순을 갖고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용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나,
시스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외주화함으로써
시스템이 창출하는 효용과
분리되고 마는 것이다.

는 신규 수요에 기반을 두어 보상을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용자가 지급하는 비용이 낮기에 외부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거래소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필자는 이 구조적 문제점을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기존의 경제체계는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활동이 창출한 효용에 근거한 금전적 가치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노동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린다. 이 각각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임금 혹은 물품 판매가의 적정성은 경제주체가 생성한 효용의 크기가 판단근거가 되어 시장에서 결정된다.

기존 경제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개방형 암호화폐 시스템이 취하고 있는 운용 방식은 구조적으로 큰 모순을 갖고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용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나, 시스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외주화함으로써 시스템이 창출하는 효용과 분리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개방형 블록체인 이용자가 해당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통해 100달러의 금액을 송금하려는 이용자는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0달러면 1개를 구매하고, 1만달러라면 100분의 1개를 구매하여 전송하면 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가격 수준은 이 이용자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며 얻는 효용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암호화폐 공급 제한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효용 창출과 보상의 불일치” 문제는 암호화폐 공급량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모두 암호화폐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안정성은 해당 암호화폐의 가격 수준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 때문에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 모두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자 집단이 암호화폐 공급 방식을 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급량을 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만약, 암호화폐 공급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이 염려될 수 있고 채굴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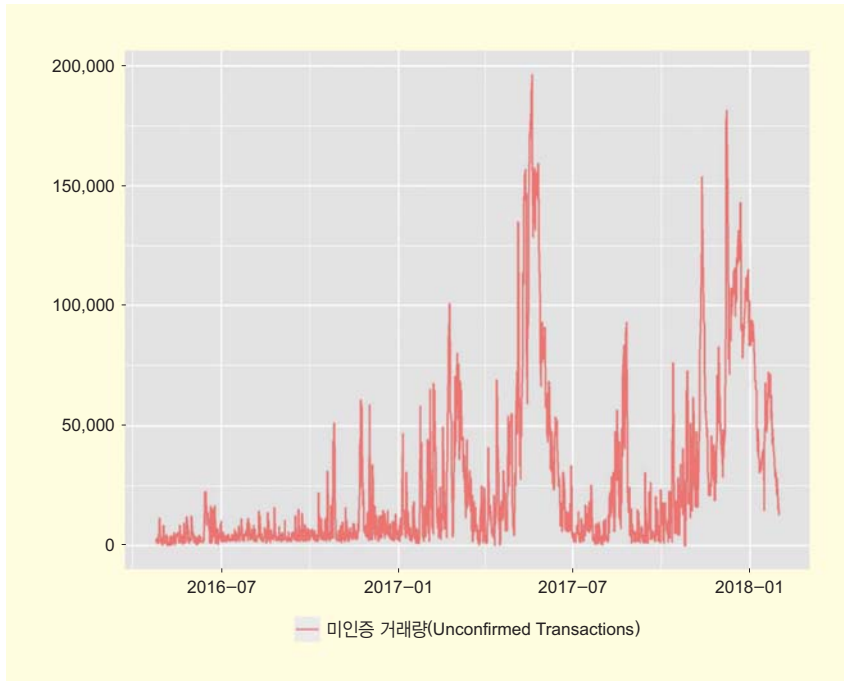
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공급되는 방식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암호화폐 총공급량 및 공급 시기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다. 총공급량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암호화폐들의 경우에도 공급속도가 일정하도록 제약되어 있어 암호화폐 공급측 변동에 의한 가치 하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그 결과 현재의 개방형 블록체인들은 거래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닌다. 개별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정해져 있고, 블록들이 인증되는 속도 역시 통제되고 있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13) 14)} [그림 Ⅲ-1]은 일별 비트코인 미인증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미인증 거래량의 수와 변동폭이 2017년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개방형
블록체인들은 거래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닌다.
개별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정해져 있고,
블록들이 인증되는 속도
역시 통제되고 있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Ⅲ-1] 비트코인 미인증 거래량 추이

(단위: 건)



출처: <https://blockchain.inf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 비트코인 블록의 경우 초당 7건의 거래가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프로그램 되어있다.

14) 블록이 인증될 때마다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지급되기에 이 속도는 화폐 공급 속도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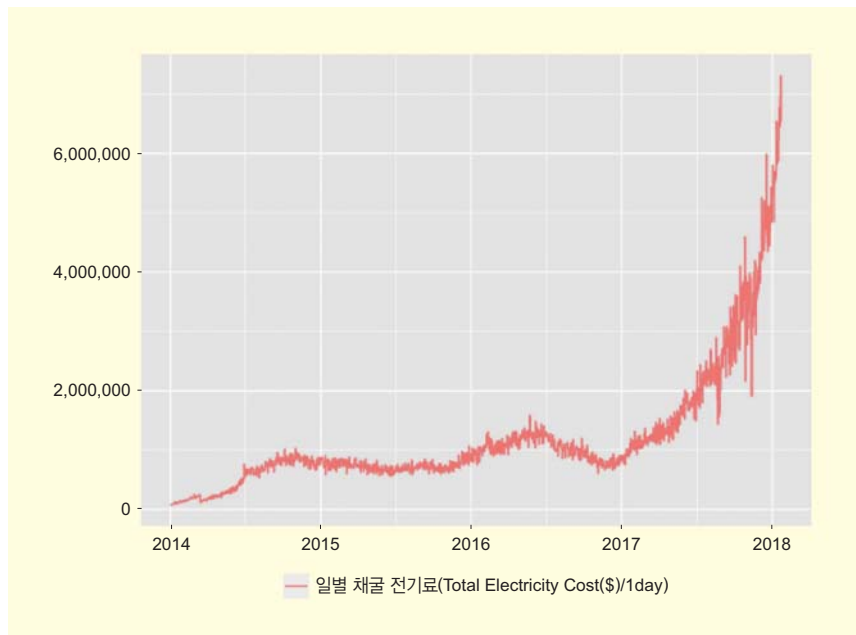
암호화폐 가치의 급등락은 불필요한 연산력 증대에 일조하여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인증구조를 갖게 한다.

또한 화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에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암호화폐 공급량이 사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증감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가치의 급등락은 불필요한 연산력 증대에 일조하여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인증구조를 갖게 한다.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개별 채굴자는 더욱 많은 연산력을 투입하여 채굴 확률을 올릴 유인을 갖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채굴자가 이와 같은 유인을 함께 갖기에 가격 급등기에 채굴 연산력 또한 함께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산력 증대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기는 하나 현재의 채굴방식은 필요 이상의 연산력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연산력의 일별 전기 사용량의 추정치를 보여준다.¹⁵⁾ 지속적인 채굴기 효율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별 채굴 전기료는 2018년 초 7백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림 III-2] 일별 채굴 전기료 추이

(단위: 달러)



출처: 저자 작성

15) 추정방법은 다음 장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다.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암호화폐 가격 수준이 해당 블록체인 전체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거래 및 채굴의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방하고 분산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 역시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채굴 과정이 심각하게 집중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채굴 성공 난이도가 연산력과 함께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 장비를 통해 직접 채굴에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채굴 풀(Mining pool)에 가입하고 이에 자신의 연산력을 제공한 뒤 전체 연산력 중 자신의 연산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 및 채굴 풀에 연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¹⁶⁾ 이 중 특정 중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산력이 전체 연산력의 30%를 넘는다는 보도 또한 존재한다.¹⁷⁾

채굴 연산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경우 블록체인 개발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량 급증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집단과 채굴자 집단의 대립으로 인해 하나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캐시(Bitcoin Cash)'와 '비트코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비트코인 개발자 집단이 제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중화가 발생하는 또 다른 지점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는 오프체인(Offchain) 거래들이 일부 지점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간 암호화폐 매매 거래를 꼽을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초당 거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모든 개별 암호화폐 매매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발생하는 거래들을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기보다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중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래소별 내부 장부의 안전성과 블록체인 안전성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블록체인에 속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매한다 하여도 이를 블록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연산력의 80%가량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채굴 연산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경우 블록체인 개발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16) 『전자신문』, 「코인워 2017」 비트코인 채굴, 80%이상 중국 집중. "투기시장 넘어 IT 패러다임 전환 봐야", 2017.7.13.

17) 『중앙일보』, 「하루 전기료만 4,400만원, 비트코인 캐는 사람들」, 2017.8.31.

이용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암호화폐 적정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 데에
준거가 되지 못한다.
암호화폐 시스템의
연산력 수준 또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의
준거가 될 수 없다.

체인에 기록되는 거래로 이관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Mt.Gox 해킹 사건 이후로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표 III-2〉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일자	국가	거래소명	피해 내용
2015년 1월	룩셈부르크	Bitstamp	500만달러(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도난
2016년 8월	홍콩	Bitfinex	6,500만달러(약 726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도난
2017년 4월	한국	Youbit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도난
2017년 6월	한국	Bithumb	거래소 회원 개인정보 약 3만건 유출
2017년 12월	한국	Bithumb	6월에 이어 추가 해킹 정황으로 현재 조사 중
2017년 12월	한국	Youbit	약 170억원 규모의 거래소 자산 도난으로 파산 신청
2018년 1월	일본	Coincheck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NEM 도난, 암호화폐 등장 이후 사상 최대 해킹 피해액

출처: 언론 보도내용(Fortune, 아시아투데이, 경향비즈, 노컷뉴스, 조선비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암호화폐 가격 수준의 적정성

개방형 블록체인의 높은 잠재력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높은 신뢰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많은 연산력을 시스템에 투입하여 블록체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에 분명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만약 그 경제적 가치가 손쉽게 환산될 수 있다면 암호화폐의 적정 가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앞 절의 논의는 암호화폐의 ‘적정 가격 수준’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용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암호화폐 적정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 준거가 되지 못한다. 암호화폐 시스템의 연산력 수준 또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의 준거가 될 수 없다. 더 많은 연산력이 투입된다 하여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굴자들이 더 많은 연산력을 투입하면 시스템은 채굴 연산의 난이도를 상승시켜 대응한다.¹⁸⁾

이 절에서는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 수준 변동 추이를 채굴 비

18) 시스템은 일정한 화폐공급 속도를 우선시한다.

용 추이와 관련 검색어 추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채굴 비용과 비트코인 가격 수준

비트코인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채굴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이 두 방식을 통한 취득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암호화폐 개당 채굴보상이 채굴비용에 비해 높을 경우 더 많은 채굴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시간당 비트코인 보상의 수는 일정하기에 더 많은 채굴자의 진입은 더 격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채굴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채굴보상이 채굴비용에 비해 낮을 경우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같은 수준의 연산력으로 얻을 수 있는 채굴량이 증대되어 채굴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채굴비용과 합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의 방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비트코인 채굴비용은 크게 채굴에 드는 전기료와 채굴기 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 든 전기료를 추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ASIC 채굴기의 J(W·s)당 연산력(Th),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일평균 초당 연산력(Th/s), 그리고 \$0.15/KWH의 전력요금을 적용하였다.^{19) 20) 21)} ASIC 채굴기의 경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성능(단위 연산력당 전력소모량)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한 기기의 사용 기간을 6개월로 가정하고 특정 시점 기준 최근 6개월 동안의 연산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채굴기 구입비 역시 채굴 기기의 시장가를 연산력 평균값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달러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과 위 방법으로 추정한 비트코인의 개당 채굴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두 값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과 거래소에서 사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채굴비용과 합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의 방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비트코인 채굴비용은 크게 채굴에 드는 전기료와 채굴기 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다.

19)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채굴기란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특정 용도를 위해 설계된 IC칩을 이용하는 채굴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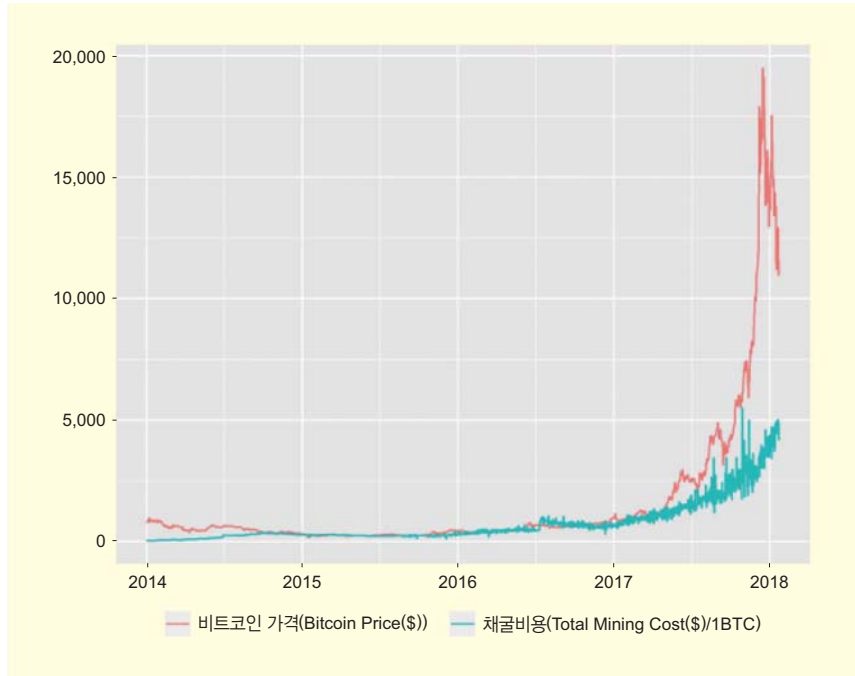
20) https://en.bitcoin.it/wiki/Mining_hardware_comparison (검색일자: 2018.1.15.) 중 Antminer의 연산력과 가격 정보를 이용함

21) <https://blockchain.info/charts/hash-rate>

2014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개당 가격과
비트코인의 개당
채굴비용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두 값은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III-3] 비트코인 가격과 채굴비용 추이

(단위: 달러)



출처: <https://blockchain.info>의 비트코인 가격 정보와 본문에서 각각 명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하지만, 두 값은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분기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평균 1,034달러 였으나 채굴비용은 871달러로 추정되어 둘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7년 3분기의 경우 격차가 약 1,604달러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격차는 현재 더욱 벌어져 2017년 4분기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가격 평균값은 9,507달러지만 채굴비용은 3,014달러로 추정되었다.

〈표 Ⅲ-3〉 분기별 비트코인 평균 가격 및 평균 채굴 비용

(단위: 달러)

시점	비트코인 가격(A)	채굴 비용(B)	차이(C=A-B)	채굴 마진(C/B)
2015년 1분기	251.21	265.28	-14.07	-0.05
2분기	236.86	234.91	1.95	0.01
3분기	254.86	225.93	28.92	0.13
4분기	346.04	243.45	102.59	0.42
2016년 1분기	410.73	368.71	42.01	0.11
2분기	512.49	468.82	43.67	0.09
3분기	615.70	734.40	-118.69	-0.16
4분기	732.72	634.70	98.02	0.15
2017년 1분기	1,034.71	871.37	163.34	0.19
2분기	1,912.55	1,234.28	678.27	0.55
3분기	3,482.15	1,877.28	1,604.87	0.85
4분기	9,507.38	3,014.50	6,492.88	2.15

출처: <https://blockchain.info>의 비트코인 가격 정보와 본문에서 각각 명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비트코인을 채굴을 통해 얻는 것이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교해 2배 이상 경제적인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또한, 2017년 중반 이후 채굴 연산력 향상으로 인한 난이도 증대로 채굴 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거래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극각적이며 빠르게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채굴력 증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를 사고 설치하는 등의 시간적 비용 또한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단기간 개방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우며 걸리는 시간 또한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기에 분명 거래소를 통해 비싼 값을 주더라도 구매할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채굴비용 대비 암호화폐 가격의 격차는 그러한 인센티브로 모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수준이다. 두 방식의 취득 가격이 장기적으로 수렴해야 함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채굴을 통해 얻는 것이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교해 2배 이상 경제적인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나. 투기적 수요와 비트코인 가격 수준

특히 [그림 Ⅲ-3]에서 두 값의 격차가 급격하게 증가한 2017년 7월을 전후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와 같은 암호화폐 가치 급등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알트코인의 기술혁신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정화폐와 교환이 되지 않는
다수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통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두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암호화폐 기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전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약이 기술적으로 극복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해당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단기간의 암호화폐 가치상승이 또 다른 가치상승을 유도하는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암호화폐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특정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전반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국한되어 기술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프로토콜은 해당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지 않았다.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블록당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가치 이동의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요인이라 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으로 범주를 넓히게 되면 그간 누적된 기술 혁신이 2017년 상반기 중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이더리움(Ethereum)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보여 준 변조되기 어려운 세계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지닌 구조적 결함을 이겨내기 위해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등장하고 있었던 것 또한 2017년 가격 급등기에 주목받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기술혁신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정화폐와 교환이 되지 않는 다수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통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요인인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전혀 없는 이들도 소량의 암호화폐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들이 국내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에 용이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에 단기간의 가격 급등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수요를 자극하여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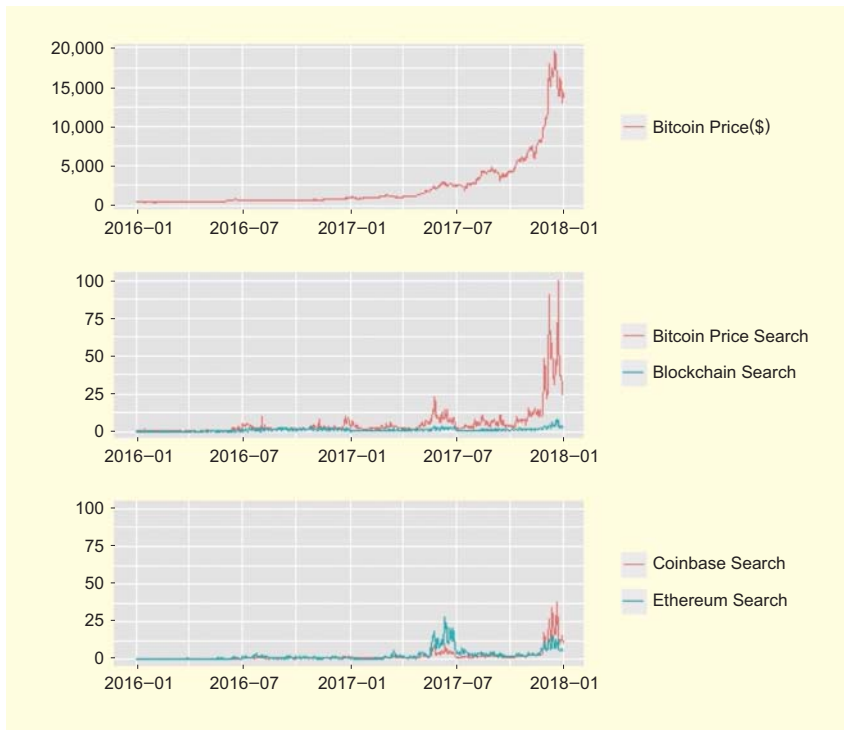
두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에 2017년 상반기 이

후의 가격 급등이 어떤 것에 더 기인하는지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도 여러 검색이 필요했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다음 두 변수의 상대적 검색 수의 변동과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암호화폐의 기술적 배경에 대한 관심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Blockchain' 검색량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이더리움 기술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고려할 때 'Ethereum' 검색량은 신기술의 유입을 대리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버블적 성격의 가격 급등을 대리하는 변수로 'Bitcoin Price'에 대한 검색과 대표적 비트코인 거래소인 'Coinone'에 대한 검색 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III-4] 암호화폐 가격과 상대적 검색량 추이

(단위: 달러, 검색지수)



출처: <https://trends.google.com/trends/>; 저자 작성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에도 여러 검색이 필요했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두 변수의 상대적 검색 수의 변동과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 및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검색량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 거품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Ⅲ-4]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1월까지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과 앞서 언급한 네 검색어의 상대적 검색량을 보여준다.²²⁾ 가운데 그림을 보면, 2017년 5월 이전의 경우 'Bitcoin Price' 검색량과 'Blockchain' 검색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경을 기점으로 두 검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7년 하반기에 이르러 두 검색어의 검색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아래 그림을 보면, 2017년 상반기 'Ethereum'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기에 앞서 언급한 요인 중 첫 번째 요인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후 대중의 관심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나 알트코인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집중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림 Ⅲ-4]는 최근의 가격 급등이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비트코인 가격 및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검색량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 거품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투자와 암호화폐의 가치

마지막으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암호화폐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 동기가 암호화폐 가격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논하겠다.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다. 개방형 블록체인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가치의 크기에 비례하여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교해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알트코인들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논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앞선 논의들은 이와 같은 논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22) 가장 높은 검색량을 보이는 'Bitcoin Price' 검색 최대치를 100으로 환산한 뒤 이를 상대적 수치로 환산한 값들임

는 것을 보여준다. 개방형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해당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와 하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가치 수준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이상 둘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IV.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개방형 블록체인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보상체계인 암호화폐의 매매거래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암호화폐 가치가 개방형 블록체인의 내재적 가치와 연동되지 않고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거래량 급증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암호화폐 가치 급등락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정책적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범정부 가상통화 TF' 발족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암호화폐 매매에 집중된 상황이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정책의 경우 거래소 폐쇄안이 검토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경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대응방안은 개방형 블록체인에 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폐쇄형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책을 제시한 정부의 방침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해당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육성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폐쇄형 블록체인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은 다량의 작업인증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비효율성을 동반한다. 둘 사이의 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형 블록체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가치 수준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이상 둘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에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활용도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 억제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정책 대응 또한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인 기술은 혜택이 비효율에 비해 큰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책은 이 선별과정에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특정 암호화폐 가치가 해당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결정되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 공급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투기적 수요의 증감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재 등장한 1,000여 종의 개방형 블록체인들 중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높은 암호화폐 가치가 지속적인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에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활용도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상의 정보에 신뢰를 부여하는 분산원장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들을 배제하겠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훗날 실제 활용되기 시작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실로 광범위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현재 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산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해당 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 개방형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은 소비자 개개인들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 가격 하락이라는 형태로 배분되기에 적용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 억제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정책 대응 또한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경향비즈』,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 해킹 당해 코인 17% 손실, 파산 절차 돌입」, 2017.12.19.
- 『노컷뉴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또 해킹 의심 정황」, 2017.12.21.
- 『녹색경제』, 「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상반된 시각」, 2017.12.29.
- 『머니투데이』, 「삼성SDS, 물류 혈맥,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잡겠다」, 2017.12.21.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 전망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제2017-004호, 2017.9.22.
- 『아시아투데이』, 「세계 3대 비트코인 거래소 홍콩 ‘비트파이넥스’ 해킹, 726억원 어치 비트코인 도난 당해」, 2016.8.3.
- 『아이뉴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2017.8.31.
- 『전자신문』, 「[코인워 2017] 비트코인 채굴, 80%이상 중국 집중, “투기시장 넘어 IT 패러다임 전환 봐야”」, 2017.7.13.
- 『조선비즈』, 「[거래소 해킹] “유빗? 처음 듣는다” 집계도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우후죽순’」, 2017.12.19.
- 『중앙일보』, 「하루 전기료만 4,400만원, 비트코인 캐는 사람들」, 2017.8.3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Insight Report』, 2016-03, 2016.5.31.
- Tech M, 「IoT인증에서 장외주식 거래까지 활용 확산」, 2017.3.23.
- _____, 「비트코인 열풍으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 2018.1.1.
- Cointelegraph*, “Who Created Bitcoin: Long Story Short,” 2017.7.17.
- Don Tapscott and Alex Tapscott, “Realizing the Potential of Blockchain,” *World Economic Forum*, 2017.
- Forbes*, “IBM And Maersk Apply Blockchain To Container Shipping,” 2017.3.5.

Fortune, “Hackers steal \$5 million from major bitcoin exchange,” 2015.1.6.

Haber, Stuart and Stornetta, W. Scott,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 *Journal of Cryptology*, 3(2), January 1991, pp. 99–111(Retrieved 4 July 2017).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www.bitcoin.org, 2008.

<https://blockchain.info/>

<https://www.corda.net/>

<https://en.bitcoin.it/wiki/>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8-2

> 미국/캐나다

[미국-해외 유보소득의 일회성 과세(transition tax)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월 19일 누적된 해외 유보 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는 규정(sec. 965)의 가이드라인(Notice 2018-13)을 발표함¹⁾
 - 미국은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해외소득에 비과세함에 따라 이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해외 유보소득에 대해 현금 보유분은 15.5%의 세율로, 자산 보유분은 8%로 과세하도록 개정함
 - 미 국세청은 2017년 12월 29일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Notice 2018-07)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임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과세대상 현금소득의 명확한 정의 등을 새로 포함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향후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의견수렴 과정 이후 시행령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대체소득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함
 - 해외 유보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는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 또는 12월 31일까지 누적된 세무상 배당이익(earnings & profit)²⁾ 중 큰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함³⁾
 - 이때, 2017년 11월 2일은 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가 일할계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임
 - 미 국세청과 재무부가 제안한 내용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계산한 세무상 배당이익에 2일간의 일별 평균 세무상 배당이익(당해연도 기준)을 가산하는 것임

1) Taxnotes, "Practitioners Welcome Transition Tax Guidance, Request More," 2018.01.29.

2) 미국세법 Sec. 964(a)와 986 규정에 따라 '1986년 이후 세무상 배당이익(post-1986 earnings and profits)'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출처: Sec. 965(d)(3))

3) 미국세법(IRC) Sec. 965(a)

〈사례〉

- * 해외기업의 1986년 이후 2017년 10월 31일까지 누적된 세무상 배당이익=10,000달러
- *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무상 배당 이익=3,040달러
- * 당해연도 일별 세무상 배당이익 =10달러(3,040달러/304일)
- * 2017년 11월 2일까지 총 세무상 배당이익 =10,020달러(10,000달러+20달러)

출처: 미국 국세청 공지(Notice 2018-13), pp. 14-15.

- 과세대상 소득 중 현금보유분 계산 시 외상매출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기채권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함
 - 현금보유액은 현금, 순외상매출금(net account receivable), 기타 현금자산의 공정가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⁴⁾
 - 기타 현금자산으로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개인용 자산,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연방·주 정부 및 해외 정부의 채권, 외화통화, 1년 이내의 단기채권이 있음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순외상매출금은 사업목적으로 판매한 자산과 관련한 순외상매출금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채권자 요구 시 상환해야 하는 채권도 단기채권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과세대상 소득을 미국 달러로 환산 시, 201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는 안을 발표함
 - 현행 규정에서 2017년 11월 2일과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두 측정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어느 일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 미 국세청과 재무부는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환율 환산일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함
- 1986년 이후 누적된 해외 결손금(deficit)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귀속시킬 때, 보통주에 결손금을 우선 귀속시키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 주주의 과세대상 누적 해외소득 계산 시 1986년 이후 누적된 해외 유보소득에서 결손금(deficit)을 차감함
 - 여러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소득 귀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존재하는 반면 결손금에 대한 시행령은 없어 이를 제정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4) 미국세법(IRC) Sec. 965(c)(3)(B)

5) 미국세법 제1221조에 따른 외상매출금으로서 사업목적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미수금에서 사업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발생한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임



> 유럽

[덴마크-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덴마크 과세당국은 2018년 2월 2일자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함⁶⁾
 - 의회 및 각 정당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구개발 및 전기난방 등과 관련한 조세지원 방안에 합의함
 - 지식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신규 고용 증대 등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됨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에서 110%로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현재 법인세 목적상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하여 10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개정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할 것이며, 이러한 세제 지원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7천만덴마크크로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101.5%(2019년) → 103%(2020년) → 105%(2021년) → 108%(2025년) → 110%(2026년)

- 이외에도 난방용 전기(electricity for heating)에 부과되는 세율을 2018년 5월 1일부터 일부 인하할 계획임
 - 덴마크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에너지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18년 5월 1일부터 1kwh당 0.15덴마크크로네에 해당하는 만큼 난방용 전기세를 인하할 계획임
 - 세율 인하로 인해 평균적인 일반 가정당 연간 약 650덴마크크로네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벨기에-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 의회 승인]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2월 1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권 보유금액에 과세하는 ‘증권계좌세(securities account tax)’ 도입안(draft bill)을 최종 승인함⁷⁾
 - 벨기에 재무부는 2017년 11월 14일 증권계좌세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승인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엔 새로 도입한 증권계좌세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고소득 개인납세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8) 9)}

6)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89, No. 7 February 12, 2018, p. 64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12_dk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2.26.)

7) Belgium-Draft bill on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adopted by parliament(02 Feb. 2018), News IBFD.

8)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9) Deloitte, "Belgian tax on securities account: Draft law adopted," 2018.02.02.

- 증권계좌세는 증권계좌의 연간 평균 잔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평균 잔액의 0.15%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대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투자회사 지분, 장기 예금증서(savings certificates), 워런트(warrant) 등이 포함됨
 - 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과 관련된 금융상품과 옵션,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연간 평균잔액은 분기별로 계산된 잔액의 평균값으로 함

- 벨기에 거주자는 국내·외 증권계좌 잔액에 대해, 비거주자는 벨기에 증권계좌 잔액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개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의 평균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함
 - 평균잔액의 기산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2018년은 예외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국내계좌의 경우 은행,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증권계좌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해외계좌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납세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합산 잔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각 금융기관에 본인이 증권계좌세 납부대 상임을 공지하고, 각 금융기관은 납세자 증권계좌 잔액의 0.15%를 징수하여 납부함(〈사례〉 참조)
 -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증권계좌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사례〉

벨기에 거주자 X가 벨기에 은행의 2개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은행: 30만유로
 - B은행: 25만유로
- 총 55만유로

〈납부방법〉

납세자 X의 총증권계좌 잔액이 50만유로를 초과하므로 증권계좌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 X는 2가지의 증권계좌세 납부방법 중 선택이 가능함

- 1) 납세자 X는 A은행, B은행에 각각 증권계좌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공지하고, 은행 A는 450유로(30만유로×0.15%)를 은행 B는 375유로(25만유로×0.15%)를 원천징수함
- 2) 납세자가 은행에 증권계좌세 납부대상자임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X가 직접 증권계좌세 825유로(55만유로×0.15%)를 신고하고 납부함

출처: Deloitte, "Belgian tax on securities account: Draft law adopted," 2018.02.02.

- 이번 증권계좌세 도입안에 대한 최종 법안은 향후 발표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스웨덴-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 발행]

- 스웨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지침(No.202 521135-17/111)을 2018년 1월 15일자로 발행함¹⁰⁾
 - 동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 중, 매출액 기준 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발행됨
- 스웨덴 모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판단에 있어 활용되는 매출액 기준은 과세연도의 길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고정된 금액임을 확인함
 - 기본적으로 해당 다국적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70억스웨덴크로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음
 - 단, 매출액 70억스웨덴크로나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보다 길거나 짧더라도 이를 월할 조정하지 아니함
 - 즉, 해당 매출액 기준은 과세연도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임
- 직전연도에는 최종 모회사가 아니었으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분할된 기업그룹의 모회사가 된 경우에도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다국적기업그룹 내 일부 부문을 분사하여 새로운

기업그룹을 형성한 경우, 신규 기업그룹의 모회사는 비록 직전과세연도에는 최종 모회사가 아니었더라도 당해 연도에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

- OECD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다국적기업 그룹 변경시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스웨덴 과세당국은 신규 기업그룹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프랑스-홍콩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 프랑스와 홍콩은 2018년 1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¹¹⁾
 - 홍콩이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OECD의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여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은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최초 교환 대상으로 함¹²⁾
 - 국가별보고서의 교환 시기 등 이행 관련 구체적

10)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30_se_2.html&WT.z_nav=Pagination, 접속일자: 2018.2.26.)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367374.html?date=2018-01-15>, 접속일자: 2018.2.26.)

11) Hong Kong: France-Arrangement on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between France and Hong Kong signed (16 Jan. 2018), News IBFD.

12)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https://www.ird.gov.hk/eng/tax/dta_cbc.htm, 접속일자: 2018.02.19.)

인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 동 협정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권고에 따라 교환된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을 규제함
 - 교환된 국가별보고서는 이전가격 관련 사전 위험 평가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양국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소득조정을 하여서는 안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또는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기한 연장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불복할 수 없음
-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과 결정에 앞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예고통지를 교부하여야 함
 - 과세대상 소득은 납세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현황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

[핀란드-납세의무 이행 절차 법규 개정]

- 핀란드는 조세 납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개정법안(Law 15/2018)을 확정하여 2018년 1월 15일자로 공포함¹³⁾
 -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5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 납세자의 소득신고 기한에 여유를 부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예비신고서(pre-filed tax return)¹⁴⁾를 수정함에 있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야 함

- 소득신고 누락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증액징정(tax increase)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을 강화함
 - 증액징정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신고 누락 등 아래와 같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함
 - 소득신고서 또는 기타 자료 제출 내용이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누락된 경우
 - 납세자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 내용에 심각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를 지정 기한내(통상 과세연도 다음 12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에 심각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13)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24_fi_1.html&WT.z_nav=Pagination, 접속일자: 2018.2.23.)

FINLEX Data Bank by Finland's Ministry of Justice(<https://www.finlex.fi/fi/laki/alkup/2018/20180015>, 접속일자: 2018.2.23.)

14) 핀란드는 일부 개인납세자들의 경우 세무당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에 대한 예비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납세자가 확인·수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를 운영함



- 증액경정에 대한 가산세율은 추가과세소득의 2%로 하되, 세부 사안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반복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는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 해당 추가과세소득이 국외로부터 수취한 것일 경우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핀란드-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지침 발행]

-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지침(No.A129/200/2017)을 2018년 1월 29일자로 발행함¹⁵⁾
 - OECD BEPS Project Action Plan 13(이전가격 문서화)의 취지에 따라, 주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지침을 발행한 것임
-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거래에 대하여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본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거래는 이전가격 문서화 대상임
 - 외국회사와 핀란드 고정사업장과의 거래 또한 작성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전가격 문서는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로 구성되며,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 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이전가격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됨
 -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이 5천만유로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4천3백만유로 미만인 경우
 - EU 위원회 권고안(2003/361/EC)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은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사업·조직·소유 구조 및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함
 -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사업내용 및 조직구조, 소속 기업들에 대한 법적 소유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다국적기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 사업전략, 시장 상황,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주요 무형자산 및 사업 위험 등에 대한 기술
 - 다국적기업 그룹의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설명
 -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서비스 계약에 대한 기술
 - 기업 그룹 차원에서의 무형자산 개발, 소유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 기술

15)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2-05_fi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2.26.)
 E&Y([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_12_February_2018/\\$FILE/2018G_00828-181Gbl_The%20Latest%20on%20BEPS%20-%2012%20February%202018.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_12_February_2018/$FILE/2018G_00828-181Gbl_The%20Latest%20on%20BEPS%20-%2012%20February%202018.pdf), 접속일자: 2018.2.26.)

- 주요 투자활동에 대한 기능분석 및 사업 구조 조정 기업인수 등에 대한 내용 등
- 로컬파일은 국외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한 기술
 - 관계사 간 거래 당사자의 사업활동 및 관련 기능, 위험 등에 대한 분석
 - 납세자의 무형자산 개발과 관련된 주요 기능 분석
 - 사업에 활용된 자산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
 - 주요 거래에 대한 객관적 비교대상 자료
 - 채택된 이전가격방법에 대한 설명 및 관련 평가 자료 등
-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최소 1천유로에서 5천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 제출한 자료에 상당한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최소 5천유로에서 1만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 관련 이전가격 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 1만유로에서 2만 5천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아시아

[중국-석유제품 소비세칙 개정]¹⁶⁾

-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소비세칙의 새로운 규정은 정유소와 석유제품 판매기업이 특별 세금계산 양식으로 거래를 보고하도록 개정됨
 -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을 거래하는 자 및 법인은 특정세금양식으로 거래 보고를 함에 따라 세무당국이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전체 거래를 감시할 수 있음¹⁷⁾
 - 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동 소비세칙 개정으로 소비세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탈세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함
 - 개정 이전에는 정제소 등의 석유생산량 허위 신고, 혼합 배럴에 대한 허위보고 등을 통해 소비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모든 정유판매 사업자는 새로운 증치세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되어야 함¹⁸⁾
 - 정유제품의 세금계산 양식에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코드를 제품별로 사용하며, 단위는 ‘톤’ 또는 ‘L’을 사용함
 - 기업은 세금계산 양식에 유종과 유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증치세 인보이스에 기재된 용량은 석유 구매 및 수입시보다 작은 금액이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16) Taxnotes, "SAT Updates Oil Product Consumption Tax Rules," 2018.1.22.

17) 중국은 2009년 1월부터 석유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였음

18) 중국 국가세무총국(<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032924/content.html>, 접속일자: 2018.2.19.)



[호주-중소기업 자본이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 초안 발표]¹⁹⁾

- 호주 재무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개정 법안 초안을 2월 8일 발표함
 -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총 연간 매출액이 2백만호주달러 미만 또는 사업자산이 6백만호주달러 미만 기업임
 - 매각 자산은 12개월 이상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함
- 새로 제안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통해 자본이득세 면제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2017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자산에서 대기업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s)을 자본이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국제기구

[OECD-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간협약 추가 서명]

- OECD는 2018년 1월 24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의 다자간협정에 말레이시아,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파나마, 튀니지 등 6개국이 추가 서명했음을 발표함²⁰⁾
 - 다자간협약은 BEPS프로젝트의 이행사항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가 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번 추가 서명으로 현재 다자간협정 서명국은 총 78개국에 이름²¹⁾
- 다자간협약 체결국은 다자간협약 조항 중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항목은 채택할 의무가 있으나,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보(reserve)를 선택할 수 있음
 - 다자간협약상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 관련 조세조약 서문 개정과 조약남용방지 규정 도입, 상호합의 절차(Action 14) 관련 납세자의 이의제기 신청 범위 확대 등이 있음

19) 재무부(<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08-2018/>, 접속일자: 2018.2.12.)

20) OECD(http://www.oecd.org/tax/beps/major-step-forward-in-international-tax-cooperation-as-additional-countries-sign-landmark-agreement-to-strengthen-tax-treatie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Major%20step%20forward%20in%20international%20tax%20co-operation%20as%20additional%20countries%20sign%20landmark%20agreem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4-01-2018&utm_term=demo, 접속일자: 2018.02.19.)

21) 다자간협정 서명국은 OECD(<http://www.oecd.org/tax/treaties/beps-mli-signatories-and-parti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다자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다자간협약 조항 중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조항과 조세조약 분쟁 해결 시 양국 간의 대응조정 조항을 적용하고,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택한 바 있음²²⁾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 지침 발표]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지침을 발표함²³⁾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 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7번째 이행지침으로 국가별보고서 신고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결 재무제표상 그룹 매출액의 계산과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등 적절한 사용의 위반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다국적기업 거주지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도 해당 거주지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을 계산하여 국가별보고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국적기업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거주지국에

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을 계산하여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특정 국가의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상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와 적절한 사용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와 적절한 사용은 양자협약 또는 다자간협약에 기술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중대한 위반 시 해당 국가는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 교환된 국가별보고서는 이전가격 관련 사전 위험평가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양국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소득조정을 하여서는 안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06.08.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ssionId=K7-mi7IRg3m9TErMQPghHspBj.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9379&menuNo=4010100, 접속일자: 2017.06.19.)
 23) OECD(<http://www.oecd.org/tax/beps/guidance-on-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htm>, 접속일자: 2018.02.19.)



[OECD-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경과 보고서 업데이트]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 캐나다와 바베이도스의 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2017 경과보고서²⁴⁾를 업데이트함²⁵⁾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OECD는 2017년 10월 첫 경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OECD는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통해 BEPS참여국의 유해조세제도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4개의 조세특례제도와 해당 제도의 유해 여부 및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캐나다는 기존 관련 검토²⁶⁾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potentially but not actually harmful)” 제도로 평가된 국제은행센터(International Banking Centre) 제도를 폐지하여 동 시정 사항이 2017 경과보고서에 반영함²⁷⁾

- 바베이도스는 2017 경과보고서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potentially harmful)”으로 판정된 두 가지 특례제도에 대해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경과보고서의 관련 현황이 “개정 중”으로 변경됨²⁸⁾
 - “국제금융서비스(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와 “외환이익 및 해외 프로젝트 공제(Credit for foreign currency earnings/Credit for overseas project or services)” 등 2가지 제도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도로 판정된 바 있음

- OECD는 2018년에도 유해 조세특례제도의 시정 이행 여부, 잠재적 유해제도(potentially harmful), 신규 BEPS 참여국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속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4) OECD, Harmful Tax Practices—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7.

25) OECD(http://www.oecd.org/tax/oecd-announces-further-developments-in-beeps-implementation-february-2018.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announces%20further%20developments%20in%20BEPS%20implementation&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8-02-2018&utm_term=demo, 접속일자: 2018.02.19.)

26) OECD(<http://www.oecd.org/tax/beeps/oecd-harmful-tax-practices-project-2004-progress-report.pdf>, 접속일자: 2018.02.26.)

27) OECD(<http://www.oecd.org/tax/beeps/update-harmful-tax-practices-2017-progress-report-on-preferential-regimes.pdf>, 접속일자: 2019.02.19.)

28) Ibid.

주요국의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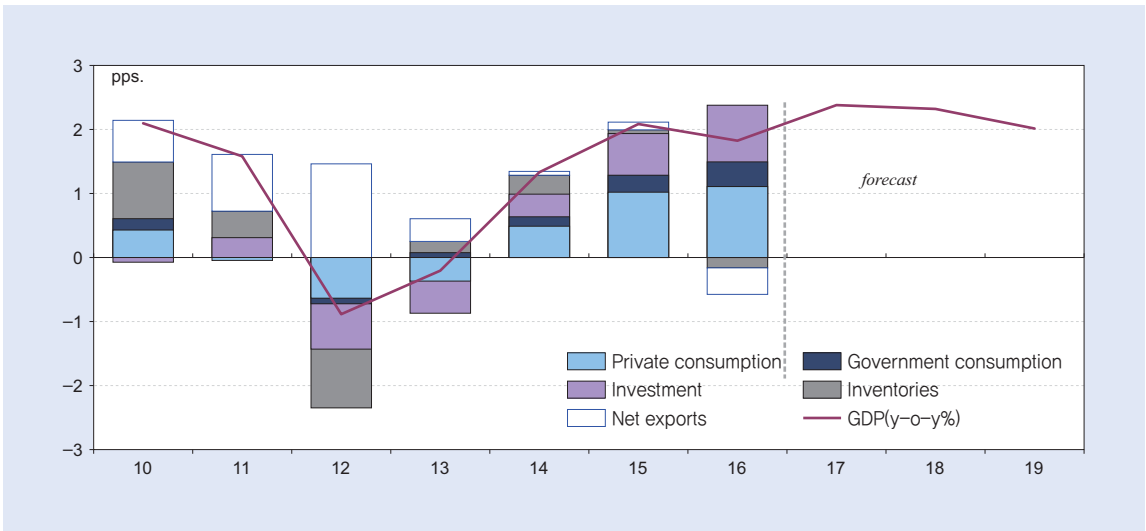
EU

- EU 집행위원회, 2018년 겨울 경제전망 발표(2018. 2.7.)^{1) 2) 3)}
 - (경제) 2017~2019년 유로지역과 EU 경제는 지난 가을 전망(2017년 11월)보다 확장세가 더 견고해질 전망
 - 높은 소비자 및 기업 경기심리지수, 노동시장

개선, 완화적 통화정책과 중립적 재정정책 기조, 불확실성 감소, 기업 수익성 증가, 세계 경제 및 무역 활성화 등에 따라 민간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불확실성 감소, 경기심리 개선, 세계경제 동시 반등으로 인해 2017년 하반기에 기대 이상의 성장이 실현됨
- 유로지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이 2.4%로 예상되고 2018~2019년 성장률이 각각 2.3%, 2.0%로 전망되어 지난 전망(각각 2.2%, 2.1%, 1.9%)보다 상향 조정됨

[그림 1] 유로지역의 실질GDP와 그 구성요소



주: 선분 위 숫자는 연간성장률을 의미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8(Interim), 2018.

1)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604_en.htm
2) 집행위는 2018년부터 경제전망을 기존 연 3회에서 연 4회(겨울 중간전망, 봄 전망, 여름 중간전망, 가을 전망) 발표하며, 중간 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만 발표
3) 본 전망은 EU 27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관계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가정에 기반



- EU 28개국 역시 2017년~2019년 각각 2.4%, 2.3%, 2.0%로 전망되어 지난 전망(각각 2.3%, 2.1%, 1.9%)보다 상향 조정됨
- (물가) 인플레이션은 2018년 유가 추이를 따라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19년 유가 하락 추세에 따른 하락을 유휴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임금 상승이 지지할 전망
 - 올해 초 유가가 지난 전망 수준보다 오르면서 2018년 물가상승률이 상향 조정됨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1.5%로 예상되고 2018년 1.5%, 2019년 1.6%를 보일 전망
 - EU 28개국의 인플레이션은 2017~2019년 각각 1.7%, 1.9%, 1.8%로 전망됨
- (리스크)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적임
 - 경제 심리-투자-임금 선순환에 따른 성장동력 강화, EMU 심화⁴⁾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
 - 세계 금융여건 경색, 세계 금융시장의 기초여건·위험 재평가에 대한 취약성, 브렉시트 협상 결과, 보호무역정책 확대, 중동·한반도 등 지정학적 긴장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

〈표 1〉 유로지역 및 EU 28개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8 Winter 전망			2017 Autumn 전망			2018 Winter 전망			2017 Autumn 전망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벨기에	1.7	1.8	1.7	1.7	1.8	1.7	2.2	1.5	1.6	2.2	1.4	1.6
독일	2.2	2.3	2.1	2.2	2.1	2.0	1.7	1.6	1.6	1.7	1.5	1.6
에스토니아	4.3	3.3	2.8	4.4	3.2	2.8	3.7	3.1	2.6	3.7	3.0	2.7
아일랜드	7.3	4.4	3.1	4.8	3.9	3.1	0.3	0.9	1.1	0.3	0.8	1.2
그리스	1.6	2.5	2.5	1.6	2.5	2.5	1.1	0.8	1.3	1.2	0.8	1.3
스페인	3.1	2.6	2.1	3.1	2.5	2.1	2.0	1.6	1.5	2.0	1.4	1.5
프랑스	1.8	2.0	1.8	1.6	1.7	1.6	1.2	1.5	1.5	1.1	1.2	1.5
이탈리아	1.5	1.5	1.2	1.5	1.3	1.0	1.3	1.3	1.5	1.4	1.2	1.5
키프로스	3.8	3.2	2.8	3.5	2.9	2.7	0.7	1.2	1.3	1.0	1.1	1.4
라트비아	4.5	3.5	3.2	4.2	3.5	3.2	2.9	3.1	2.9	2.9	2.8	2.9

4) 유럽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EU의 경제 통합의 중요한 단계로, 회원국 간 경제 정책 조정, 특히 정부 채무 및 적자를 통한 재정 정책 조정,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독립적 통화 정책, 유로지역 내 금융 기관의 단일 규정과 감독, 단일 통화 사용을 의미. EU는 2015년 경제동맹, 통화동맹, 재정동맹, 추진과정 중 민주적 책임성·적법성 및 제도적 절차 강화 등 EMU 완성을 위한 2025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에는 이를 수정한 로드맵을 발표

〈표 1〉의 계속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8 Winter 전망			2017 Autumn 전망			2018 Winter 전망			2017 Autumn 전망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리투아니아	3.8	2.9	2.6	3.8	2.9	2.6	3.7	2.9	2.5	3.8	2.9	2.5
룩셈부르크	3.4	3.9	3.6	3.4	3.5	3.3	2.1	1.9	1.6	2.1	1.7	1.9
몰타	6.9	5.6	4.5	5.6	4.9	4.1	1.3	1.5	1.8	1.3	1.5	1.8
네덜란드	3.2	2.9	2.5	3.2	2.7	2.5	1.3	1.6	2.3	1.3	1.5	2.2
오스트리아	3.1	2.9	2.3	2.6	2.4	2.3	2.2	2.1	1.9	2.0	1.6	1.7
포르투갈	2.7	2.2	1.9	2.6	2.1	1.8	1.6	1.6	1.5	1.5	1.4	1.5
슬로베니아	4.9	4.2	3.5	4.7	4.0	3.3	1.6	1.8	2.0	1.6	1.5	1.8
슬로바키아	3.4	4.0	4.2	3.3	3.8	4.0	1.4	2.2	2.0	1.3	1.7	2.0
핀란드	3.3	2.8	2.5	3.3	2.7	2.4	0.8	1.4	1.6	0.9	1.3	1.7
Euro area	2.4	2.3	2.0	2.2	2.1	1.9	1.5	1.5	1.6	1.5	1.4	1.6
불가리아	3.8	3.7	3.5	3.9	3.8	3.6	1.2	1.4	1.5	1.0	1.5	1.6
체코	4.5	3.2	2.9	4.3	3.0	2.9	2.4	2.4	2.0	2.4	2.1	2.0
덴마크	2.1	2.0	1.9	2.3	2.0	1.9	1.1	1.4	1.6	1.0	1.4	1.7
크로아티아	3.2	2.8	2.7	3.2	2.8	2.7	1.3	1.6	1.7	1.3	1.5	1.6
헝가리	3.8	3.7	3.1	3.7	3.6	3.1	2.4	2.8	2.9	2.3	2.6	3.0
폴란드	4.6	4.2	3.6	4.2	3.8	3.4	1.6	2.1	2.6	1.6	2.1	2.8
루마니아	6.7	4.5	4.0	5.7	4.4	4.1	1.1	4.1	3.0	1.0	2.9	3.0
스웨덴	2.7	2.7	2.0	3.2	2.7	2.2	1.9	1.8	1.7	1.8	1.6	1.7
EU27	2.6	2.5	2.1	2.4	2.2	2.0	1.6	1.7	1.7	1.6	1.5	1.8
영국	1.8	1.4	1.1	1.5	1.3	1.1	2.7	2.7	2.0	2.7	2.6	2.1
EU28	2.4	2.3	2.0	2.3	2.1	1.9	1.7	1.9	1.8	1.7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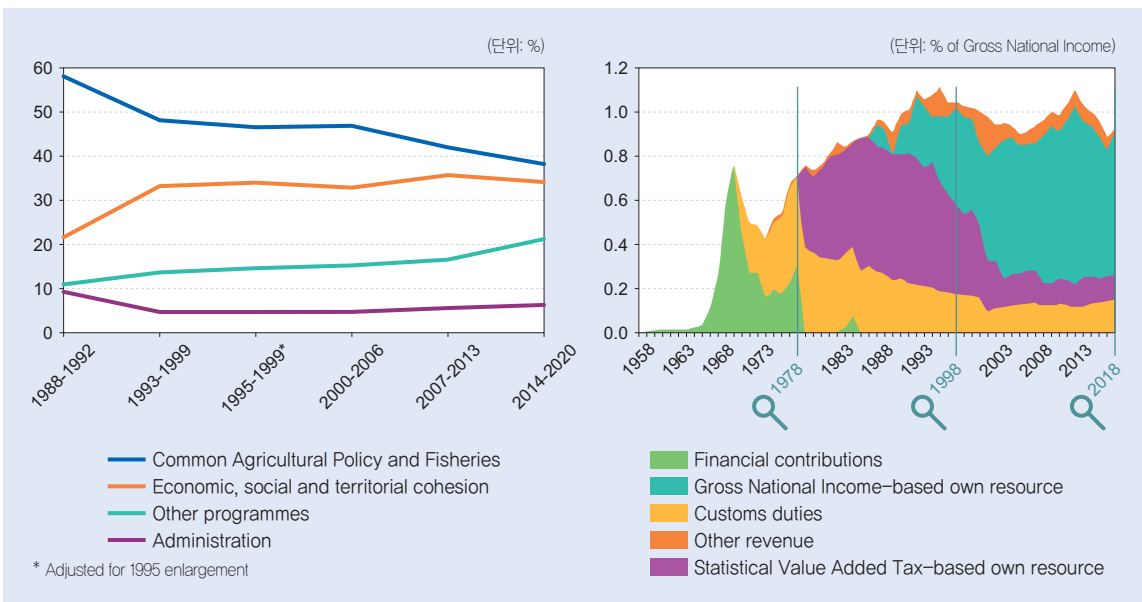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8(Interim)*, 2018.



- EU 집행위, 다년도 예산 체계에 대한 제안문 발표 (2018.2.14.)⁵⁾
 - EU 집행위는 EU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2020년 이후 새롭고 현대적인 다년도 예산 체계⁶⁾에 대한 제안문(Communication: A new, modern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a European Union that delivers efficiently on its priorities post-2020)을 발표
 - (예산현황) EU 예산과 그 혜택, 성과 및 부가가치에 대해 필요한 사실을 제공

- EU 예산은 EU 공동 정책 수행과 전 세계의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그 규모는 28개 회원국의 GNI 대비 약 1% 수준임(7년간 약 1.1조유로)
- EU 지출 구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공동 농업정책⁷⁾ 지출과 결속⁸⁾ 부문 지출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
- EU 수입 구성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GNI 기반의 자체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2] EU 지출 및 수입 구성



출처: EU 집행위, A new, modern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a European Union that delivers efficiently on its priorities post-2020

5) 출처: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745_en.htm

6) 다년도 예산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EU가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각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것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예산 체계를 준수해야 함. 현 다년도 예산 체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

7) 농업인 소득안정, 복지, 공동농업시장안정조치, 농지개발 등

8)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발전 등

- (수입·지출추계) 다양한 실행가능 정책 선택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
 - Erasmus+(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는 2014-2020년 147억유로가 편성되어 4% 미만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나, 그 두 배인 7.5%가 받기 위해서는 300억유로가 요구되며, 전 청년의 3분의 1이 받기 위해서는 900억유로가 필요
 - 배출권 경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EU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에 따라 7년간 70억유로~1,050억유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 (지연손실) EU 예산 채택이 지연됐을 때 학생, 연구자,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받을 충격을 보여줌으로써 예산의 적시 통과를 강조
 - 2014-2020년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의 착수가 늦어져 투자가 많이 지연되었고 2014년 승인기준⁹⁾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망명, 이민 및 안보 기금(Asylum, Migration and Security Funds)에 대한 법률이 2014년에야 채택되었는데, 이로 인해 회원국의 수용 능력과 국경 관리가 악영향을 받음

- EU 경제재무이사회, 2019년도 EU 예산 지침 채택(2018.2.20.)¹⁰⁾
 - 시민들의 EU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지출이 중요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

- EU 예산은 성장 제고, 고용 진작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결속 및 농업 개선, 경쟁력 강화, 이민·안보·국경보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야 함

■ EU 정상회의, 다년도 예산체계의 정치적 우선순위 논의(2018.2.23.)¹¹⁾

- EU 정상들은 Erasmus+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대응, 국방·안보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에 동의
- 또한 많은 정상들은 결속 정책, 공동 농업 정책, 연구·혁신, 범유럽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브렉시트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식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9) 승인기준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에 따라 승인된 해 혹은 향후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을 의미
 10)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8/02/20/>
 11) 출처: EU 정상회의,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8/02/23/>



IMF

- IMF, 2017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2017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 및 이사회 견해 발표 (2018.2.13.)^{12) 13)}
 - (경제전망) 2017년 한국 경제는 전년에 비해 개선, IT 및 건설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은 3.2%로 추정되고(2016년 2.8%), 2018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
 - (요인)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2018년 성장률은 3.0%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물가) 근원 인플레이션은 2017년 2%, 2018년 1.9%로 전망됨
 - (경상수지) 2017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6%, 2018년 5.4%로 전망
 - (경제여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 불균형이 높음
 - (잠재성장률) 총요소 생산성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서 성장률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 불평등)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불평등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성

장이 필요

- (대외 불균형)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켜 대외 불균형 초래
 - (가계부채) 금융안정에 관한 중요한 위험 요인이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음
 - (재정정책) 재정여력이 있으므로 단기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공급 증대, 포용적 성장 및 내수 중심의 경제 재조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함
 - ☞ (내용)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i) 정규직 근로자 해고 조건 완화, ii) 직업 훈련 및 매칭 강화, iii) 실업안 전망 강화·확대
 - ☞ (전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및 주인의식이 구축되어야 하고,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필요
 - (청년고용) 지난 10년간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하락하였고, OECD 평균*에 비해 약 10%p 낮은 수준이므로, 마이스터 학교, 일·학업 병행, 인턴십 등을 강화해야 함
- * 2016년 한국의 15~24세 청년 고용률은 27%로 OECD 평균인 41%에 비해 약 14%p 낮음

12) 출처: <http://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8/02/13/Republic-of-Korea-2017-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45625>

13)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IV)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 2017년 연례협의의 일정: 협의단 한국 방문(17.11.1.~14.) 및 연례협의결과 브리핑(11.14) → 연례협의의 보고서(Staff report) 작성(12.27) → 이사회 회의(18.1.27) → 연례협의의 보고서 및 이사회 견해 발표(18.2.13.)

- (여성 노동참가율 제고) 영육아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적정 수준의 보육료 유지, 육아휴직 장려, 부소득자(second earner)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과세 등이 필요
-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 분야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공 부문 인력 증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전반적인 소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나, 변화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핀 후에 신중하게 추가 인상에 대해 고려해야 함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보조 조치가 필요
- (혁신 지원)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특히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성장 ·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뒤야함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으므로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표 2〉 주요 경제 지표(2014-18)

(단위: %, 조원, 십억달러)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Real GDP(%)	3.3	2.8	2.8	3.2	3.0
Total domestic demand	3.1	4.0	3.7	5.0	3.0
Net foreign balance	0.4	-1.1	-1.0	-1.9	0.3
Nominal GDP(조원)	1,486	1,564	1,637	1,732	1,805
Prices(%)					
CPI inflation(end of period)	0.8	1.1	1.3	2.1	1.9
Trade(%)					
Terms of trade	1.7	12.0	1.0	0.4	-0.9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GDP 대비 %)					
Revenue	21.2	21.5	22.5	22.4	22.7
Expenditure	20.8	20.9	20.7	21.2	21.2
Net lending(+)/borrowing(-)	0.4	0.6	1.7	1.2	1.4
Overall balance	0.6	0.0	1.0	0.8	1.0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2.0	-2.4	-1.4	-1.7	-1.6
General government debt	35.9	37.8	38.3	37.6	37.3
External debt(십억달러)					
Total external debt(end of period)	424.3	396.1	380.9	364.9	354.0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Table 1.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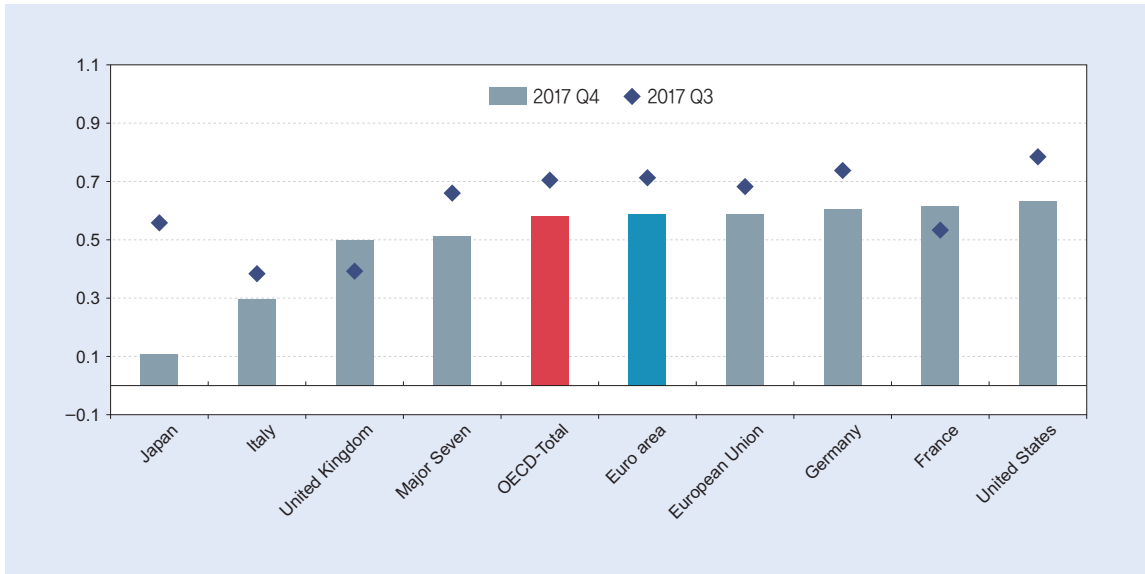
OECD

- OECD, 2017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 (2018.2.19.)¹⁴⁾
 - OECD 지역, 유럽연합, 유로지역의 2017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모두 전 분기 대비 0.6%로 3사분기 성장률 0.7%에 비해 다소 하락
 - 일본은 0.1%를 기록하여 3사분기 0.6%에 비해 하락 폭이 컸고, 미국(0.8% → 0.6%), 독일(0.7% → 0.6%), 이탈리아(0.4% → 0.3%) 등도 3사분기에 비해 낮은 수치 기록
 - 반면, 프랑스(0.5% → 0.6%), 영국(0.4% → 0.5%)은 3사분기에 비해 상승

- OECD 지역 2017년 4사분기의 전년 동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은 2.6%로 2016년 4사분기 성장률 2.8%에 비해 하락
 - G7 국가 중 독일이 2.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영국은 1.5%로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
- OECD 지역의 2017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은 2.5%로 2016년 1.8%에 비해 상승

[그림 3] 2017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출처: "GDP Growth—Fourth quarter of 2017, OECD," OECD Newsroom, 2018.2.19.

14)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fourth-quarter-2017-oecd.htm>

〈표 3〉 2017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 동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2015	2016				2017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2.2	1.8	1.7	1.6	2.0	2.2	2.5	2.8	2.6
G20	3.3	3.1	3.1	3.0	3.3	3.4	3.7	3.9	-
유럽연합	2.2	1.9	1.9	1.9	2.0	2.2	2.5	2.8	2.6
유로지역	2.0	1.7	1.8	1.7	1.9	2.1	2.4	2.8	2.7
G7	1.6	1.3	1.3	1.4	1.7	1.8	2.1	2.2	2.3
캐나다	0.3	1.1	1.0	1.5	2.0	2.3	3.6	3.0	-
프랑스	1.0	1.2	1.2	0.9	1.1	1.2	1.9	2.3	2.4
독일	1.3	1.8	1.9	1.9	1.9	2.1	2.3	2.7	2.9
이탈리아	1.2	1.3	1.0	0.9	1.0	1.3	1.5	1.7	1.6
일본	1.3	0.5	0.8	0.9	1.5	1.3	1.6	1.9	1.6
영국	2.1	1.9	1.8	2.0	2.0	2.1	1.9	1.7	1.5
미국	2.0	1.4	1.2	1.5	1.8	2.0	2.2	2.3	2.5

출처: "GDP Growth—Fourth quarter of 2017, OECD," OECD Newsroom, 2018,2,19.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전문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미 의회, 국가채무 한도 유예 및 임시예산 등을 규정한 2018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H.R. 1892/P.L. 115-184) 통과(2018.2.9.)¹⁵⁾
 - (개요) 동법은 향후 2개년 동안의 예산방향을 규정한 법으로 임시예산 및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이슈를 규정하고 있음¹⁶⁾

- (예산방향 합의) 향후 2년(FY2018~19) 동안 국방과 국내지출(domestic funding) 예산을 약 3천억달러 증가시키는 데 합의
 - * (국방) 2018: 800억달러 증가/2019: 850억달러 증가
 - * (국내지출) 2018: 630억달러 증가/2019: 680억달러 증가
- (국가채무) 국가채무 한도 유예를 2018년 3월 1일 까지로 규정
 - 2017년 9월 8일에 설정된 연방채무의 유예기간(~2017.12.8.)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까지 재무부는 비상재원(extraordinary)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음

15)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igns-h-r-1892-law/>

16) 미 정치전문지(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morning-defense/2018/02/09/congress-ends-spending-impasse-overnight-shutdown-099092>



- (임시예산) 동 법은 2018년 2월 8일에 만료된 FY2018 제4차 임시예산을 연장하였으며, 만료시한은 2018년 3월 23일로 규정하고 있음

* 제5차 임시예산은 제4차 임시예산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등의 합의 불발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난 1월의 정부폐쇄 사태 이후 약 3주 만에 재발생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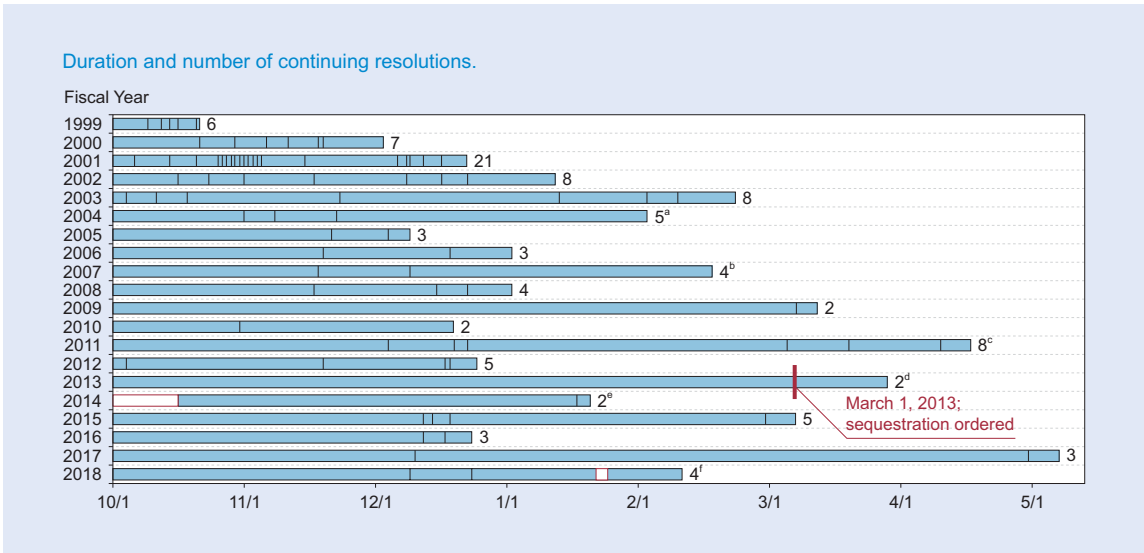
〈표 4〉 FY2018 5차 임시예산(Continuing Resolution) 경과

임시예산(CR) 회차	법안 번호	의회 통과일	만료일
4차 임시예산	H.R.195 (P.L. 115-120)	2018.01.22.	2018.02.08.
5차 임시예산 불발	-	4차 임시예산의 만료시한(2.8.)이 지났음에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정부폐쇄 사태 발생 후 약 5시간 반이 지난 후 합의가 이루어짐	
5차 임시예산	H.R.1892 (P.L. 115-184)	2018.02.09.	2018.03.23.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미국"편을 재구성하였음

〔그림 4〕 FY1999~FY2018 미국 임시예산(CR) 횟수와 기간

(단위: 횟수, 기간)



주: 1) 미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s://www.gao.gov/products/GAO-18-368T>
출처: GAO analysis o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ata¹⁾/GAO-18-368T

17)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jan/22/government-shutdown-republicans-democrats>

■ OMB(예산관리처), FY2019 예산안 발표(2018.2.12.)¹⁸⁾

- (예산 기초) 4개의 화두 제시: ①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 ② 더욱 튼튼하고 견실한 미국 경제, ③ 근면 성실한 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4개의 화두를 바탕으로 국경(특히 남서지역 국경) 안보 강화 및 국가안보 증대, 국방재건, 낭비지출 종식, 경제성장 및 기회 확대, 인프라 재건 등에 대한 투자를 언급

* (인프라 투자) 1조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19년에 450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 (국경안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80억달러 투입 및 관세국경보호청(CBP)¹⁹⁾에 160억달러를 배정하여 남서부 지역 국경의 작전통제권을 지원할 예정(한편, 2019년에 약 2억 1천만달러를 투입하여 750명의 국경수비대 증원 계획)

- 2019 예산안 4개 화두(원문 발췌) -

…… 서문 생략 ……

The pillars of this vision, and thus the budget, are:

- ①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 ② a stronger, healthier American economy;
- ③ an enhanced quality of life for hardworking Americans; and
- ④ a commitment to a better future.”

- (경제전망) 20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20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실업률은 2017년보다 0.5%p 감소한 3.9%로 전망되며, 2021년까지 3%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4%대에 진입할 전망

〈표 5〉 FY2019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구분(CY)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8
	estimate	Projections					
실질GDP 성장률	2.2	3.0	3.2	3.1	3.0	...	2.3
CPI(Urban)	2.1	2.1	2.0	2.2	2.3	...	2.3
실업률	4.4	3.9	3.7	3.8	3.9	...	4.8

출처: OMB,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Table 2-3), 2018,2,12.

18) OMB(예산관리처),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budget-fy2019.pdf>

19)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재정수입) FY2019 세입은 전년 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GDP 대비 16.3%) 전망
- (재정지출) FY2019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편성(순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3,630억달러)
 - (재량지출) FY2019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 3,04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19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조 7,390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FY2019 연방정부 채무²⁰⁾(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0조 290억달러, GDP 대비 78.8%) 대비 3.6% 증가한 21조 30억달러(GDP 대비 80.3%) 전망
- (주요 기능별 지출)^{21) 22)} 국방, 보건, 사회보장 등 주요 지출 전망 규모는 아래와 같음
 - (국방)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8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5.6%
 - ☞ 기능별 국방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16%)의 총지출 대비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7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보건, Health) 전년 대비 0.4% 소폭 증가한 5,942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3.5%
 - ☞ 보건 분야 하위 기능 중 보건관련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은 감소, 건강관리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와 소비자 및 직장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등은 증가

〈표 6〉 미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2027	2028	2019 ~ 2028
예산총량										
수입	17.3	16.7	16.3	16.4	16.5	16.8	...	17.7	17.8	17.1
지출	20.8	21.0	21.0	20.8	20.5	20.3	...	19.2	19.0	20.0
재정적자	3.5	4.4	4.7	4.5	3.9	3.5	...	1.4	1.1	2.8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76.5	78.8	80.3	81.3	81.7	81.9	...	74.6	72.6	-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20) 정부 내부거래 제외

21) 출처: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Table 3.2—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2018,2,12.

22) 미국의 2018회계연도 기간은 2017.10~2018.9이며, 현재 FY2018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예산으로 운영 중이기에, FY2019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 의 규모는 추정치임

- (사회보장)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 52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3.9%
 - ☞ FY2018 재원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메디케어)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1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4.3%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0.2% 소폭 증가한 약 5천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1.3%
 - ☞ 소득보장 관련 총지출은 증가하였으나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 제외), Housing assistance (주거지원) 및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식품·영양지원) 등의 하위기능 사업은 감소
- 2017.8.15.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에 행정절차(permitting process) 및 환경평가(environmental review)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음
- (계획)
 -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federal/state/local authorities)와 민간기업(private level)의 파트너십을 통해 1.5조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며, 장기대안을 마련할 예정
 - 인프라 관련 연방 총예산(총 2천억달러)의 4분의 1 규모를 주 및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농촌(rural)지역 인프라²⁵⁾에 투입
 - 지역별 수요에 부합한 인프라 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우선순위 설정 권한 부여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2. 기타

- 미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2018.2.12.)^{23) 24)}
 - (현황)
 -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질(quality) 수준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나, 고속도로의 약 20%는 낙후(poor condition)되고, 다리(bridges)의 약 3분의 1이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음

23)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building-stronger-america-president-donald-j-trumps-american-infrastructure-initiative/>

24)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will-rebuild-american-infrastructure-forge-path-towards-greater-prosperity/>

25) 예: 도로 및 하수관 개선, 전력 공급, 광대역통신망(broadband) 접속 등



일본

1. 기타

- 내각부, 2017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8. 2.14.)²⁶⁾
 - 2017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연율 0.5%)로 8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명목GDP 성장률은 0.0%(연율 -0.1%)를 기록

- (국내외 수요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0.1%로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0.0%를 나타냄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민간수요 중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민간설비투자는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민간주택투자는 감소

〈표 7〉 2017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분기 대비, %)

	2016년	2017년					2017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여도	4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4	0.3	0.6	0.6	0.1	-	0.5
국내수요	0.1	0.2	0.9	0.0	0.1	(0.1)	0.6
민간수요	0.3	0.3	0.9	0.2	0.3	(0.2)	1.1
민간최종소비지출	0.1	0.3	0.9	-0.6	0.5	(0.3)	1.9
민간주택투자	0.8	1.2	0.9	-1.5	-2.7	(-0.1)	-10.2
민간설비투자	1.6	0.1	1.2	1.0	0.7	(0.1)	2.8
민간재고증감	(-0.1)	(-0.0)	(-0.1)	(0.4)	-	(-0.1)	-
공적수요	-0.5	0.1	1.2	-0.5	-0.2	(-0.1)	-0.9
정부최종소비지출	-0.1	0.1	0.2	0.0	-0.1	(-0.0)	-0.5
공적투자	-1.8	-0.2	4.7	-2.6	-0.5	(-0.0)	-2.1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4)	(0.1)	(-0.3)	(0.5)	-	(-0.0)	-
재화·서비스 수출	2.7	2.0	0.0	2.1	2.4	(0.4)	10.0
재화·서비스 수입	0.6	1.7	1.9	-1.2	2.9	(-0.4)	12.0

주: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7(平成29)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8.2.14.

26) 내각부, 「2017(平成29)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8.2.14.

http://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민간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하여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 민간주택투자는 전 분기 대비 2.7%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0.1% 감소, 공적투자는 전 분기 대비 0.5% 감소함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기계, 자동차 등 수출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4% 증가하여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휴대전화 등 수입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9%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여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재무성, 2018년 국민부담률²⁷⁾ 전망 발표(2018.2.23.)²⁸⁾
 - 2018년도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42.5%로 전망되며, 국민부담률에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합산한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한 48.7%로 전망

〈표 8〉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추이

(단위: %, 조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세부담률 ①)	22.7	23.1	25.0	25.4	25.1	25.0	24.9
사회보장부담률 ②)	17.0	16.8	17.2	17.2	17.7	17.7	17.6
국민부담률 ③=①+②)	39.7	39.9	42.1	42.6	42.8	42.7	42.5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비율④)	10.3	9.2	7.5	6.1	6.3	6.7	6.2
잠재적 국민부담률⑤=③+④)	50.0	49.2	49.6	48.7	49.1	49.4	48.7
국민소득(조엔)	359.8	374.2	379.2	390.3	391.7	402.9	414.1
(참고) GDP 대비 국민부담률	28.9	29.5	30.8	31.1	31.1	31.3	31.2

주: 1. 2016년도까지는 실적치, 2017년은 실적전망, 2018년은 전망치
 2. 재정적자는 국가(중앙) 및 지방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출처: 재무성, 「國民負担率(對國民所得比)の推移」, 2018.2.23.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27) 국민부담률은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 비율인 조세부담률과 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비용 비율인 사회보장부담률의 합계를 의미. 또한 국민부담률에 국민소득에 대한 재정적자의 비율을 합산한 것을 잠재적 국민부담률이라고 함

28) 재무성, 「國民負担率(對國民所得比)の推移」, 2018.2.23.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독일

1. 기타

- 경제에너지부,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8) 발표(2018.1.31)²⁹⁾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³⁰⁾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2.4%, 실업률은 고용자 수의 증가(49만명)로 2017년보다 0.4%p 낮은 5.3%이며 이는 통일독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

- 2017년 12월 연방은행의 월간보고서에서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2.5%, 실업률을 5.3%로 전망³¹⁾

-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장기적 과제에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에 중점
 - 또한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Ⅲ(High-Tech GründerfondsⅢ)³²⁾ 신설

〈표 9〉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전망)
실질GDP 성장률	1.9	2.2	2.4
실업률	6.1	5.7	5.3
설비투자	2.2	3.5	5.0
건설	2.7	2.6	2.8
내수	2.4	2.2	2.3
수출	2.6	4.7	5.3
수입	3.9	5.2	5.8
임금	2.5	2.7	2.9

출처: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8, 2018.1.31.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29)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2018.01.31.

<http://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8/20180131-wirtschaftlich-gestaerkt-in-die-zukunft-jahreswirtschaftsbericht-2018.html>

30)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31) 독일연방은행, Pressenotiz, 2017.12.15.

https://www.bundesban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BBK/2017/2017_12_15_prognose.html

32) 첨단기술창업 투자펀드(HTFG): 독일 최대 창업투자 펀드로 2005년 설립 후 현재까지 약 460개 기업에 자금투자 및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며 펀드규모는 2017년 9월까지 약 3억 1천만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BMWi, 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FY2017 예산집행결과 발표(2018.2.6.)³³⁾
 - 2017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678억유로로 2016년의 691억유로와 비교하여 13억유로 개선됨
 -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71억유로 증가한 3,869

억유로를 기록하여 재정법에서 설정한 재정지출목표를 달성
 -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96억유로 증가한 3,136억유로

〈표 10〉 FY2017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6	2017	증감률
재정지출	379,818	386,935	1.9
정부지원 (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88	991	0.3
인건비	123,191	127,612	3.6
운영비	52,760	53,857	2.1
채무비용	41,447	41,697	0.6
투자지출	11,000	11,124	1.1
정부개입지출	83,824	90,012	7.4
금융활동 (opérations financières)	1,151	1,481	28.7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65,457	60,161	-8.1
재정수입	303,967	313,589	3.2
조세수입	284,097	295,633	4.1
소득세	71,751	73,020	1.8
법인세	29,990	35,715	19.1
에너지제품소비세	15,878	11,114	-30.0
부가가치세	144,439	152,419	5.5
기타 조세수입	22,039	23,365	6.0
세외수입	16,238	13,818	-14.9
협력기금 (Fonds de concours) ¹⁾	3,632	4,137	13.9
일반회계 재정수지	-75,851	-73,347	-3.3
특별회계 재정수지	6,795	5,564	-18.1
총재정수지	-69,056	-67,783	-1.8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분담금
 출처: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17(201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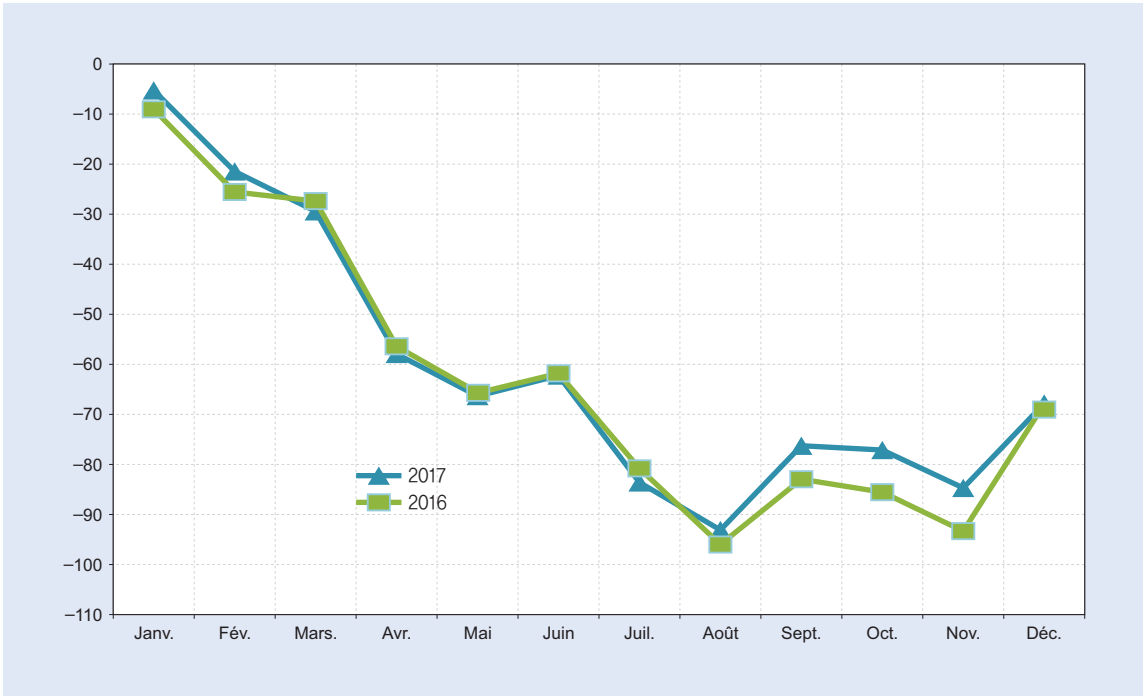
33) 프랑스 예결산.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SMB/2017/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1122017.pdf



[그림 5] FY2017 누적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주: 2017년 연초부터 누적된 재정수지 그래프

출처: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17(2018,2,6)

2.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17년 4분기 실업률 잠정치 발표 (2018.2.15.)³⁴⁾

- 2017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직전 분기 대비 0.7%p, 전년 동기 대비 1.1%p 하락한 8.6%로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³⁵⁾
 -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8.9%로 전 분기보다 0.7%p 하락

-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특히 15-24세 및 25-49세 인구의 실업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실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20만 5천명 감소하여 250만명을 기록
- 장기실업률³⁶⁾은 3.6%로 전 분기 대비 0.6%p, 전년 대비 0.7%p 하락함

34)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326107>

35)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argumentaire/emploi-les-chiffres-du-chomage-au-plus-bas-niveau-depuis-2009>

36)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한 실업자의 비율

〈표 11〉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2017 Q3	2017 Q4 잠정	증감(%p)		2017 Q4 실업자수 (천명)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9.3	8.6	-0.7	-1.1	2,502
15-24세	21.7	20.7	-1.0	-2.8	567
25-49세	8.9	8.0	-0.9	-1.1	1,407
50세 이상	6.4	6.1	-0.3	-0.5	529
장기실업률	4.2	3.6	-0.6	-0.7	1,056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18.2.15.

- 프랑스 내무부, 이민자 규제 강화 법안 상정(2018. 2.20.)³⁷⁾
 -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
 - EU 지역 밖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3,750유로(약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년 형기 선고
 - 불법체류자 구금 기간을 최대 45일에서 90일로 연장
 - 이민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
 -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외추방 강화
 -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기간을 11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프랑스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학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 언어교육 시간을 2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
 - 학부모에게 언어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Open the School to Parents 프로그램 확대
- 마크롱 대통령, 농축산업 개혁을 위한 50억유로 규모의 정부 보조금 조성 계획 발표(2018.2.22.)³⁸⁾
 - 현재 농업인구의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성할 계획
 - 동물복지(animal wellbeing), 식량안보(food security) 및 유기농업(organic farming) 투자에 대해 지원

37)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argumentaire/integration-donner-a-ceux-qui-le-veulent-toutes-les-chances-de-s-inserer>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partage/9981-discours-d-edouard-philippe-sur-la-politique-d-integration>
 프랑스 내무부,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Presentation-du-projet-de-loi-asile-et-immigration>
 프랑스 내무부, 72 propositions pour une politique ambitieuse d'intégration des étrangers arrivant en France, 2018.2.

38) 프랑스 정부, <http://www.elysee.fr/declarations/article/transcription-du-discours-du-president-de-la-republique-emmanuel-macron-a-la-nouvelle-generation-agricole/> 2018.2.23.



- 2022년까지 유기농 농가 비율을 15%까지 높여, 프랑스의 높은 유기농 농산물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7-18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7-18) 발표(2018.2.7.)³⁹⁾

* 영국은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통상 매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을 편성해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4월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증액 또는 수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에 의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

요한 경우 특별추경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을 편성할 수 있음

• FY 2017-18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본세출예산 대비 1,706억파운드 증액한 7,471억파운드임

- 부처별 지출한도(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⁴⁰⁾는 본세출예산 대비 175억파운드 증액한 3,299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⁴¹⁾은 본세출예산 대비 1,524억파운드 증액한 3,558억파운드임

* 2017 가을예산안에서 발표된 국가보건서비스(NHS) 추가 지원, 장애인시설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 등이 일부 반영되었고 Brexit 준비와 관련된 부처별 추가 비용도 포함됨

〈표 12〉 FY2017-18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본예산(A)	2017-18 추경안(B)	증감(B-A)
부처별 지출한도(DEL)	312,350	329,867	17,517
연간관리지출(AME)	203,366	355,750	152,384
총순예산(Total Net Budget)	515,716	685,617	169,901
총비예산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60,797	61,531	734
총지출 (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576,513	747,148	170,635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s)	-83,892	-259,140	-175,248
총순현금소요액 (Total Net Cash Requirement)	492,621	488,008	-4,613

출처: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 2017-18*, 2018, Table1.

39)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17-18>

40)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가능한 지출

41)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 총비예산지출⁴²⁾은 약 7억파운드 증액한 615억 파운드임

- FY 2017-18 총순현금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⁴³⁾은 본세출예산 대비 46억파운드 감소한 4,880억파운드임

2. 기타

- 재무부와 주택 및 지방정부부, 지방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8억 6,600만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2018.2.1)⁴⁴⁾

- (배경) 2017 가을예산안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임

* 영국은 2017 가을예산안에서 주택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⁴⁵⁾ 연간 30만호 신규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주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주요국 예산안』, '영국' 참고)

- (지원 내용) 8억 6,600만파운드의 지방 주택공급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약 20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지원
 - (지원 대상) 도로 신설, 홍수피해 방지, 토양 복원 등 주택 건설에 앞서 필요한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 예: Leicester지역 택지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 인프라 지원 1천만파운드, North Devon 지역의 초등학교 건설 650만파운드, south-east Sheffield의 배수 시설, 신규 도로 건설 360만파운드 등의 지원을 포함

- (자금 조달) 주택인프라 기금(Housing Infrastructure Fund)⁴⁶⁾으로 지원
- (기대 효과) 이번 투자 계획은 정부의 '산업 전략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⁴⁷⁾과 함께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할 전망

- 통계청, 2017년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 (2018.2.22.)⁴⁸⁾

- 2017년 4분기 직전 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⁴⁹⁾ 대비 0.1%p 하락한 0.4%로 나타남
 -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경제활동별 기여도는 총차분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42)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43) 예산의 지출(expenditure)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를 의미

44) 출처: HM Treasury 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866-million-investment-to-help-unlock-potential-200000-new-homes>

45) 2017 가을예산안에 의하면 영국은 평균 주택 가격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약 8배(런던은 12배) 수준이며 주택 보유비율이 감소(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보유 비율이 2003~4년 이래로 20% 감소)하는 등 주택 시장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임

46) 주택인프라 기금은 2017-18부터 2020-21년까지 주택 수요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신규 주택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2016 가을보고서에서는 23억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었으며 2017 가을예산안에서 50억파운드로 기금 규모가 확대됨

47) 기술(skills),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국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임(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주요국 예산안』, 중 '영국' 참고)

48) 출처: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secondestimateofgdp/octobertodecember2017>

49)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rossdomesticproductpreliminaryestimate/octobertodecember2017>



〈표 13〉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2015		2016				2017			
	Q4	Q1	Q2	Q3	Q4	Q1	Q2	Q3	Q4	
실질GDP 성장률	0.7	0.2	0.5	0.5	0.7	0.2	0.3	0.5	0.4	

출처: 영국 통계청 보도자료

〈표 14〉 2017년 4분기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농업	제조업	서비스	건설
경제활동별 기여도	-	0.1	0.4	-

	가계 소비	비영리기관 소비	정부 소비	총자본 형성	순수출
지출항목별 기여도	0.2	-	0.1	0.6	-0.5

출처: 영국 통계청 보도자료

- 전년 대비 2017년 GDP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1.9%)보다 둔화된 1.7%를 기록
 - 특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 연간 가계 소비 증가율은 2016년(3.1%) 대비 하락한 1.8%로 나타나 2012년(1.8%)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전문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C) 하원 상정(2018.2.26.)⁵⁰⁾
 -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C)은 약 36.8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40.2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⁵¹⁾ 약 -3.4억캐나다달러
 - 4개 분야⁵²⁾에 대한 주요 지출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경제분야) 학자금대출 탕감 지원에 204백만캐나다달러
 - ☞ (사회분야) 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Strong, Secure, Engaged)⁵³⁾ 지원에 435백만캐나다달러
 - ☞ (대외분야) Internat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⁵⁴⁾에 377백만캐나다달러 지원(대외원조 지원 203백만캐나다달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170백만캐나다달러)
 - ☞ (정부분야) 군인소득보장보험(Service Income Security Insurance Plan(SISIP))⁵⁵⁾ 부족분 지원에 623백만캐나다달러

50) 캐나다 의회에산처, http://www.pbo-dpb.gc.ca/en/blog/news/Supps_C_2017-18

51) 법정지출은 입법화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출로 추경예산안에서는 정보 목적으로 법정지출 전망치를 제공

52) 캐나다의 일반정부 지출은 경제, 사회, 대외, 정부 4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 다시 16개 부문으로 분류

53)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국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7.6.7.), 이 계획에 따라 국방지출은 2016-17년 18.9억캐나다달러에서 2026-27년 32.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https://www.canada.ca/en/department-national-defence/news/2017/06/canada_unveils_newdefencepolicy.html

54) Internat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

55) 군인들이 군복무와 상관없이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 이유로 제대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의 85%는 국가가 부담하고 15%는 개인이 부담

〈표 15〉 FY2017-18 추경예산안(C)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 분		일반 예산 (Budgetary)	투융자 예산 (Non-Budgetary)
추경(C)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4,016	14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36	264
	합계	3,680	278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Supplementary Estimates(C) Table 2-1, 2018.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호주

1. 예산·결산 등

■ 호주중앙은행(RBA), 2018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 (2018.2.9.)⁵⁶⁾

• 호주 중앙은행은 “Statement on Monetary Policy”⁵⁷⁾에서 2018년 및 향후 기간 동안의 호주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 변화를 발표

- (성장률) 2018-19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3.25%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11월 전망치 (2018년 3.0%, 2019년 3.25%)와 비슷한 수준

☞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광산업이 쇠퇴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소득 및 소비, 비광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 호주의 광산업은 GDP 대비 6.4%를 차지하며, 호주 GDP는 광산업 외에 서비스업(66%), 제조업(6.6%), 농림어업(2.6%) 등으로 구성됨. 호주 광산업은 GDP 비중에 비해 총수출의 48%를 차지하여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

☞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시행과 공공인프라 투자가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

☞ LNG(액화천연가스) 생산량이 정상수준(steady state)에 도달하고 LNG 수출량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호주의 LNG 수출량은 2016년 4,488만톤(세계 수출량의 17%)으로 카타르 다음으로 세계 2위임. LNG는 호주 자원 및 에너지 수출액의 약 10%(2016년)를 차지함

-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은 2019년 초 약 2.0%에서 2020년 중반까지 2.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말부터 2.25%로 전망

☞ 빅토리아주(州)의 높은 유틸리티(전기, 가스) 가격과 예정된 담뱃세 인상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

☞(실업률) 경제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5.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56) 출처: 호주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publications/smp/2018/feb/>

57)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표되며, 세계경제 및 환율 시장,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



〈표 15〉 FY2017-18 추경예산안(C)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17년 12월	'18년 6월	'18년 12월	'19년 6월	'19년 12월	'20년 6월
실질GDP 성장률	2.5	2.75	3.25	3.5	3.2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25	2.25	2.25	2.25
근원 인플레이션	1.75	1.75	1.75	2.0	2.0	2.25

출처: RBA,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Feb, 2018(2018,2,9.)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지현 연구원〉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2.10.~3.9. 세미나 등: 3.1.~3.31.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2018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3. 30.(금) 13: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재정학회 	18-03-30
<p>■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3. 23.(금)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재정학회 	18-03-23
<p>■ 한국연금학회 2018년 특별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3. 22.(목) 15:00~17:10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901호 • 주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 : 과제와 도전 • 발표: 신성식 전문위원(중앙일보), 김성일 소장(KG제로인연금연구소) • 토론: 유희원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금학회 	18-03-22
<p>■ 가상화폐/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3. 22.(목) 15:00~17: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발제: 이한상 교수(고려대), 김대현 수석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 • 토론: 이경호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송민섭 교수(서강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회계기준원 	18-03-22
<p>■ 공공가치 포럼: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공공가치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3. 02.(금) 15:40~18:30 • 장소: 한국생산성본부 101호 • 발제: 광현근 교수(대전대), 신희영 교수(경주대) • 토론: 김광구 교수(경희대), 김명환 교수(강남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행정학회 	18-03-02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전략과 올해 작업반 운용방향 등을 논의 	기획재정부	18-03-02
<p>◇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일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기획재정부	18-03-02
<p>◇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정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일부터 시행되는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 강화 -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 지원 -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관세청	18-03-02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8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 • 출연연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內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제5조 제4항) 마련 •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 (제11조 제1항 제15호)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제40조의2) 	기획재정부	18-02-28
<p>◇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2.13일~2.27일,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초)할 예정 	기획재정부	18-02-13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공급자의 비용 전가 / 오승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보험연구원	18-03-05
<p>◇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수탁징수 방안 / 류지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의 효율적 체납정리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을 고려 	한국지방세연구원	18-02-28
<p>◇ 201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확대의 의미와 복지분야 쟁점 / 강병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 특징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하고, 올해 예상되는 복지분야의 주요 쟁점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방안 모색 	민주연구원	18-02-23
<p>◇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홍준표, 오준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청년층의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 이에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현상을 5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현대경제연구원	18-02-14
<p>◇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 정도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18-02-14
<p>◇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 최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검토 •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 의회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국회입법조사처	18-02-13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Wealth Taxation and Wealth Accumul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Denmark / by Katrine Jakobsen, Kristian Jakobsen, Henrik Kleven, Gabriel Zucm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ing administrative wealth records from Denmark, we study the effects of wealth taxes on wealth accumulation. Denmark used to impose one of the world’s highest marginal tax rates on wealth, but this tax was drastically reduced and ultimately abolished between 1989 and 1997. ... (후략) 	NBER	18-03-05
<p>◇ Taxing Hidden Wealth: The Consequences of U.S. Enforcement Initiatives on Evasive Foreign Accounts / by Niels Johannesen, Patrick Langetieg, Daniel Reck, Max Risch, Joel Slemro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 2008, the IRS initiated efforts to curb the use of offshore accounts to evade taxes. This paper uses administrative microdata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nforcement efforts on taxpayers’ reporting of offshore accounts and income. ... (후략) 	NBER	18-03-05
<p>◇ Ramsey Taxation in the Global Economy / by V. V. Chari, Juan Pablo Nicolini, Pedro Te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 study cooperative optimal Ramsey equilibria in the open economy addressing classic policy questions: Should restrictions be placed to free trade and capital mobility? Should capital income be taxed? Should goods be taxed based on origin or destination? What are desirable border adjustments? ... (후략) 	CEPR	18-02-26
<p>◇ Optimal Taxes on Capital in the OLG Model with Uninsurable Idiosyncratic Income Risk / by Dirk Krueger, Alexander Ludwi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 characterize the optimal linear tax on capital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two period lived households facing uninsurable idiosyncratic labor income risk. The Ramsey government internalizes the general equilibrium feedback of private precautionary saving. ... (후략) 	NBER	18-02-19
<p>◇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s, Interest and Capital Gains: The Debt Equity Bias at the Personal Level / by Michelle Harding, Melanie Mart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paper presents statutory tax rates on several forms of capital income, including dividends, interest on bonds and bank accounts, and capital gains on shares and real property, including integration between the corporate and personal levels. ... (후략) 	OECD	18-02-15



| 정책 흐름 |

-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지침 전면 개편 -

* 본 자료는 2018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3.8일(목)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 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 감사운영규정, 보수지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통합공시 기준

- 지침 개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공기관·법령 관련 전문가 참여 및 주무부처와 소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기관 CEO 워크숍(17.12.20)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 1단계 관리체계 개편: ①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② 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 지표 설계 ③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를 통한 개방형 평가
 - 공공기관의 자율을 확대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우선,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합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 병행

-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 강화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① (기타공공기관 사전규제정비)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 가능
 -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
 - * 다만 기관 간 형평성 확보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
- ② (규제 완화) 법적 근거 없는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협의 근거 폐지
 -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책임 확보) 방만경영 우려 기관에 대해 경영실태 및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 신설

-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 등 시행

④ (사회적 책임·윤리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공공성·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 신설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 지침 개정으로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혁신활동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가 이루어지고
 • 청년일자리 창출,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 이와 더불어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간섭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3.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

- 공운위는 동 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
- 산업부는 기능개선 소위 및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공운위에 보고·확정할 계획

참고 1 공공기관 지침 개정 주요 내용

1 지침 구조 개편

①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침은 존속, 특정 정책을 위한 단발성 권고안·계획 등은 경영 또는 혁신지침으로 통폐합(32개 → 15개)

지침 통폐합

구분	지침 통폐합안
통합 (20개 → 4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9개 지침 → 경영지침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명예퇴직 개선방안, 국외여행 개선방안 등 7개 지침 → 혁신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2개 지침 → 감사지침
존속(11개)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개 지침 → 보수지침
폐지(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계약사무규칙 등 11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영 지침

② 공운법 제50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반적 경영감독은 '경영지침'으로
 • 공운법 제15조에 근거한 소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지침'으로 재구조화

현행

구분	경영	혁신
공기업 준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기타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편 후

구분	경영	혁신
공기업 준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타		

⇒

2 지침 구조 개편

1 (증원 협의) 기재부 증원 협의는 공기업 · 준정부
으로 한정,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규정 폐지

* 예산 비수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증원협의의 근거가
지침에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증원협의 실시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예산실) 협의를 거쳐
증원 결정

2 (기타공공기관 준용 규정 폐지) 예산편성 · 집행,
자산운용, 인사 및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타공공
기관에 대한 준용 규정 삭제

⇒ 기타공공기관 적용 · 준용 여부는 소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가 결정

3 (예외적 적용) 기관 간 형평성을 위해 임직원 보
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는 기타공공기관에도 준
용

• 과도한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직
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불가피하게 기타공공기
관에도 준용

*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

** 임원보수지침은 산은, 수은, 기은 등 금융형 기타공공기
관(5개)에만 예외로 적용하고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타공
공기관에 대한 적용 규정은 삭제

• 이미 숲공공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기타공
공기관에도 준용

• 채용비리 대책(1.29)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채용

의 공정 관리, 피해자 구제 등의 조항은 숲공공
기관에 준용

3 공공기관 자율 확대

1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협의 폐지) 공기업 · 준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 폐지

* (기존)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
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 → (개편) 협
의 폐지

2 (자율운영 확대)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직위 기준
완화

* (기존) 대상직위는 도입 첫해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
위 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 (개편)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 기관 특성에 따라 경영혁신전략 수립기간을 자
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매년 경영혁신전략 ·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개편) 경영혁신전략 ·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 간소화) 사복기금
출연시 기재부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 절차 폐
지

* (기존) 기재부 협의 · 주무부처 승인 → (개편) 기재부 협의

4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① **(경영혁신 진단 신설)**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공공서비스의 품질 수준 등을 진단

* 공운법 제15조 제2항: 기재부장관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수준 진단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경영혁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사전협의

② **(채용비리 근절 등)**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 부정 채용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 정비
-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 마련

③ **(공공성·사회적 책임 규정 신설)** 일자리 창출, 상생 및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새로운 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단녀 포함)·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 금지
- * 정원의 5% 이내에서 비정규직 운영 → 비정규직 운영 원칙적 금지

④ **(공시 강화)** 경영공시의 예외가 되는 이사회 회의록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공시하되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5 기타 제도 개선

①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기간 확대(2년 → 3년)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초과현원 발생, 2년내 초과현원 해소에 대한 부담으로 대체충원을 기피

② **(기관장·기관평가 통합)**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평가에 반영

- 기관장 성과 협약 체결시 중장기 성과목표를 경영평가 주요사업 지표와 연계하여 설정

③ **(공동 경영진단 신설)**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영진단 → (개편) 경영진단(공공기관), 공동 경영진단(공공기관+기재부)

- 공동 경영진단시 진단기관 선정에서부터 절차,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참고 2 공공기관 관련 지침 통폐합안

〈현행〉		〈개편 후〉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3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4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5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6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		
7	공공기관 임금파키제 권고안		
8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		
9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순환보직 권고안		
10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11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12	연도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13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14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		
15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16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1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18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19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4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20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5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3	공기업·준정부 경영평가편람 및 관련 지침	7	공기업·준정부 경영평가편람 및 관련 지침
24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5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에타조사 운용지침	9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에타조사 운용지침
2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규칙		
27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9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기준	13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기준
3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3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1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32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최

* 본 자료는 2018년 3월 6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발표한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최」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14개 회원국 재무담당 공무원 및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3.6.(화)~8.(목) 3일간 개최됨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 세계은행(WB) 및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

- 2018년 들어 첫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재평가」라는 주제하에 진행되며,
 - 6일 김완섭 재정성과심의관(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OECD 국가 및 PEMNA 회원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
- 사례공유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실제 회원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도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각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 한편, 한국은 PEMNA 측으로부터 한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사례공유를 요청받아 우수회원국*으로서 사례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음

* 한국은 '11, '12, '16년 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 Practice Results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주요 제도를 구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연계하고 있는 국가로서 상위

랭크에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 목표관리, 핵심사업 평가, 심층평가, 예산반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재정성과관리 과정을 발표할 계획임
 - 특히 작년 도입된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자세히 소개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성과정보 수집·환류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
- 한편 마지막 세션에 진행될 예산분과 운영진 회의에서는 오는 5월 개최될 연차총회 계획과 PEMNA의 활동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아·태지역 재정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제도운용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참고 1

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요

- *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의 약자
- (일시·장소) 3.6(화)~8(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제) 성과예산제도의 재평가(Rethinking Performance Budgeting)
- (참석자) 회원국* 예산 담당관료 및 WB 전문가 등 약 60여 명
 - *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4개국
- (주요일정) 한국사례 발표 및 그룹토의 참여
 - (한국사례 내용) 한국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해
- 예상 회의일정

날짜	시간	내용
3.6 (화)	09:00~09:20	• 환영사 및 의제 소개
	09:40~10:50 11:10~12:10	• (세션1) OECD 국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적용사례 * 러시아 재무부, 호주 재무부 (또는 전문기관) 발표 예정
	13:30~14:40 15:00~16:30	• (세션2) PEMNA 회원국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 의무교육 및 1차 의료 관련 사례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발표 예정
	16:30~17:30	• 그룹토론
3.7 (수)	09:10~10:50	• (세션3) 성과정보의 전략적 관리 ⇒ 한국 외 6개 회원국 사례 발표
	11:10~12:10	• (세션4) 질의응답
	13:40~15:20 15:40~17:10	• (세션5) 사례공유 및 그룹발표
3.8 (목)	09:10~10:20	• (특별세션) 중남미·동아시아 국가 예산투명성·성과정보 포털 우수사례 발표
	11:40~12:30	• 예산분과회의 리더십 팀 회의

참고 2 아·태재정협력체(PEMNA) 개요

1. PEMNA 개요

- (설립목적) 회원국간 재정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 (best practice) 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12년 출범
- (구성·조직)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2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운영위 산하 사무국(조세재정연)과 2개 분과회의(예산, 국고)로 조직
 - *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
 - **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원) 설립 시 한국(3년, 300만달러)과 WB(3년, 90만달러) 출연, 한국이 '17년부터 2년간 총 160만 달러 추가 출연('17.1. 계약)

(단위: 만달러)

지급시점	'13.7월	'14.7월	'15.7월	'16.12월	'17.12월	'18.12월
지급금액	100	100	100	80	80	미정

* 다수의 회원국들이 출연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필리핀('16년, 10만달러), 동티모르('18~'20년, 6만달러)가 출연계약 체결

- (성과) 한국은 운영위 의장* 수임과 사무국 유치 등 PEMNA 운영을 주도하며 재정개혁 경험과 사례 전파에 적극 참여
 - * (1기) 이강호 과장 → (2기)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 → (3기) 김완섭 재정성과심의관
 - **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김종면 센터장, 김현아 박사 등)
- 총회급 회의 7번, 분과별 회의 15번 개최 등 국제 협력체로서 지위 확립, 회원국 내 실무·고위급 인사 교류에 기여

재정포럼

2018년 3월호 통권 제26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3월 15일 발행 / 제22권 제3호(통권 제26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1~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